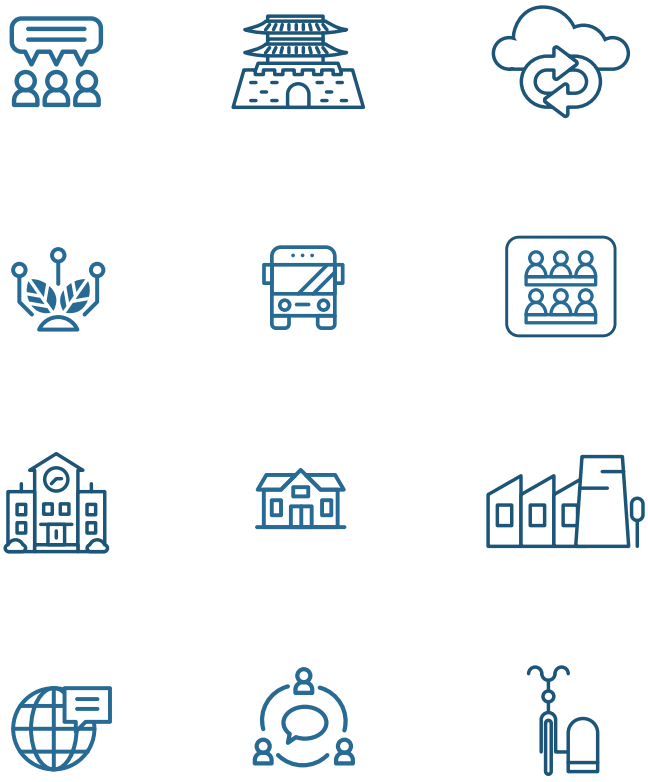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5-제8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목 차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123대 국정과제 [국정기획위원회] ····· 7

2. 정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첫 도입 [보건복지부] ····· 31

3. '농촌관광 가는 주간 시범사업'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35

4.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관계부처합동] ····· 39

5. 5만 마을기업의 15년 기다림 「마을기업법」 공표 [행정안전부] ····· 57

6. 전문가 모여 '소방드론' 재난현장 미래전략 구축 [소방청] ····· 62


##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병원 응급실 '경광등 알림 시스템' 운영 [경상남도] ····· 69

2. 다자녀가구 대상 '서울런' 무료 인터넷강의 지원 [서울특별시] ····· 75

3. '부산온나 청년패스' 전국 최초 추진 [부산광역시] ····· 78

# 목 차

##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복지미용사, 일자리와 정서돌봄의 새로운 연결 [경북연구원] ····· 87

2. 생성형 AI와 일자리 변화 [국회] ····· 94

3. 「2025년 10대 유망기술」 발표 [세계경제포럼] ····· 100

4.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107

5.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114


##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국가어항 사업의 연내 집행완료 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23

2.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행정안전위원회] ·····127

3.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 요청 [교육위원회] ·····134

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 문제 [교육위원회] ····· 140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1. 123대 국정과제 (국정기획위원회)

### 1 국정과제 체계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추진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

| | | | | | |
|---|---|---|---|---|---|
| 국가비전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 | | |
| 국정원칙 |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 | | | |
| 국정목표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 추진전략 |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br>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br>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 1. AI 3대 강국 도약<br>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br>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br>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br>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br>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br>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br>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br>2. 내 삶을 돌보는 복지<br>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br>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br>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br>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br>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br>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br>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br>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
| 123대 국정과제 | 19개 과제 | 29개 과제 | 23개 과제 | 37개 과제 | 15개 과제 |

## 2 123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 국정목표 ❶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전략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 12·3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권력 사유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은 전 국민적 실망과 분노로 연결, 결국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수립에 대한 열망**으로 귀결

○ 이재명정부는 그 뜻에 따라, 국가 위기 재발을 막는 **새로운 헌법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관이 권력 사유화에 동원되는 흑역사를 방지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실시하며, **국민이 존중받는 사법개혁 추진** 필요

□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실효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보장

□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으로, 검사를 공소 및 사법통제 기능에 집중토록 유도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실질적인 경찰권 분산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강화 및 **자치경찰제도** 시행

□ 업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된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바른 **봉사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개혁

□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개혁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참여** 및 **인권 중심의 선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법개혁 지속 추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과제명 | 주관 |
|---|---|
| [국정0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 국조실 |
| [국정0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 국방부 |
| [국정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법무부 |
| [국정0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 경찰청 |
| [국정0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감사원 |
| [국정0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 법무부 |
| [국정0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 방통위 |
| [국정0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 인권위 |

## 전략 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이념·젠더·노사·지역·세대 간 갈등**과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가중된 국민 분열 속에서 **통합**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치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증대

○ **정부**와 **국회** 간 **협치체계**를 제도화하고,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 갈등 현안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공론화기구**를 통한 **숙의공론절차**를 도입하여 이념과 진영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으로 **시민참여, 국민통합의 대한민국** 실현

□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 등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여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

□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국가와 개인의 **영예**가 되도록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소명으로 실천

○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에 이바지한 **특별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도록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0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국조실** |
| **[국정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 **행안부** |
| **[국정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 **보훈부** |
| **[국정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 **보훈부** |

## 전략 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 지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리더십과 정부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와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불안을 초래

○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부의 변화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다시 정부를 믿고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다가가 현장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재설계**하고, **충직하고 일 잘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한 책무

○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다수의 불편도 미리 해결**하는 **진짜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

□ **투명한 예산 공개,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쓸 곳에 제대로 쓰고 낭비를 줄여 **내 돈처럼 예산을 쓰는** 국정운영 추진

○ **공공기관**도 국가와 지역의 발전, 국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성과와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

□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창업 및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는 해소**하여 **국민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 **인사처** |
| **[국정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 **행안부** |
| **[국정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 **국조실** |
| **[국정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권익위** |
| **[국정17]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기재부** |
| **[국정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 | **기재부** |
| **[국정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국조실** |

## 국정목표 ❷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전략 1 AI 3대 강국 도약

□ AI는 **경제·사회**는 물론 **외교·안보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범용기술**이자 **국가 전략자산**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독자적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 AI 대전환**을 추진할 필요

○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과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정부-기업 모두**가 **AI를 가장 잘 활용**하며,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현**

□ **AI인프라·데이터 확충**과 **초고성능·초지능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하여 산업·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확보

○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범용AI** 및 **피지컬AI** 등 **초격차 AI 기술 확보**와 함께 AI 시대를 이끌 **최고급 AI 인재** 양성·확보

□ **공공 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추진** 등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하고, **AI를 활용하여** 경제·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제로리스크 사회'** 프로젝트 기획·추진

○ **AI·디지털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AI 학습용 원본 정보 활용 특례'** 도입 등 **안전한 활용 체계** 확립으로 **국민들이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실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 과기정통부 |
| [국정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 과기정통부 |
| [국정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 과기정통부 |
| [국정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 과기정통부 |
| [국정24]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 행안부 |
| [국정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 개인정보위 |

## 전략 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 **3·3·5 대도약**(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위한 기본 토대는 **R&D 투자**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튼튼한 국가 과학기술시스템**

○ **창의·도전·실용**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필요

□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안정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민간 참여** 확대

○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지역 주도 R&D** 강화

□ **청년연구자**가 **걱정 없이 장기간 연구**에 **전념**하며 성장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국가 차원의 **우수 인재 양성**과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 추진

□ **국가 임무** 기반, **민관협업** 방식의 **전략적 R&D 투자**로 **NEXT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핵심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N**ew, **E**merging, e**X**ponential **T**ech : 차세대·신흥기술 중 미래산업을 주도할 분야

○ **민관협업 방식**의 **초대형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원천기술** 및 **인프라·인력** 확보

○ **우주항공기술 자립**과 역량 있는 **민간기업 육성**을 통해 K-Space 실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 **과기정통부** |
| **[국정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 **과기정통부** |
| **[국정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과기정통부** |

## 전략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주력 제조업**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경쟁국의 급속한 추격, 혁신역량 저하 등으로 **내우외환**에 직면

○ 세계 주요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을 통해 제조업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

○ 우리 기업의 시장이자 활동무대였던 세계시장도 세계화 퇴조와 보호무역의 파고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

□ 우리의 강점인 **산업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혁신**하여 산업강국 실현

○ 주력 시장 외에도 글로벌사우스 등 **신시장 개척**으로 **무역 구조**를 **혁신**하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과 **기술유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 **미래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주력 산업 혁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 활성화** 지원

○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과 글로벌 역량까지 갖춘 빅테크로 도약하도록 **성장사다리 구축**

□ **산업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산업·통상 전략과 **진짜 성장**을 이끌 **경제성장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성장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혁신**과 인력 양성 등 **산업혁신 기반** 마련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 산업부 |
| [국정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 산업부 |
| [국정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국토부 |
| [국정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 복지부 |
| [국정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 기재부 |
| [국정34] 제3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 중기부 |
| [국정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 중기부 |
| [국정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국조실 |
| [국정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 산업부 |

## 전략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기후위기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을 촉구

○ 기후정책 후퇴로 약화된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동력**을 **회복**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 추진 필요

□ 이재명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고,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제시

○ 기후위험이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정교하게 **예측**하여 **국가 인프라**와 **사회·경제 대응력**을 높이고,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세심한 보호 대책을 추진

□ 전국 산업 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성장 벨트**를 **완성**하고, 지역 균형성장과 첨단 산업 지원

○ 탄소중립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주력산업**의 **저탄소화**와 **탄소중립 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해 '**산업 성장지향형 탄소중립**'의 선도국 도약 추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38]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 **산업부** |
| **[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산업부** |
| **[국정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환경부** |
| **[국정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 **산업부** |
| **[국정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환경부** |
| **[국정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 **환경부** |
| **[국정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 **환경부** |
| **[국정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 **환경부** |

## 전략 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첨단전략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긴요

○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이 협력하여 **AI,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는 **100조원 펀드**를 조성하고, 해당 전략산업의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성장**(Scale-up) **자금**을 **공급**

□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성화**할 필요

○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 **기업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향유**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주식 **수요기반 확충, 시장구조 재편 등**으로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디지털자산**의 **시장 확대**와 **세계적인 제도화** 흐름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및 **투자자 보호환경 조성**이 요구

○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등 생태계 정비를 통해 **산업육성기반**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연계자산 제도화** 등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기회**를 제공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 **금융위** |
| **[국정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금융위** |
| **[국정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금융위** |

## 국정목표 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전략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방 경쟁력 약화**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저하**

○ 특정 지역에 자원을 집중투자하는 **불균형 성장**과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

□ **5극3특 초광역권**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전략** 추진

○ **5극3특**이 **좋은 일자리**, **매력적인 정주·교통 여건**, **우수한 지역 대학**과 **교육 환경**, **첨단산단**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새만금·부산 등 **균형거점** 육성,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 **소멸위험지역** 활력 제고로 **균등하고 고른 삶의 질** 뒷받침

□ **지역**이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기반 구축**

○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권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지역 혁신동력 확보**

○ 5극3특 실현을 위해 **특별지자체·자치도**에 **맞춤형 특례 확대** 등 제도 개선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 **행안부·국토부** |
| **[국정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 **국토부·행복청** |
| **[국정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 **국토부·산업부** |
| **[국정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 **행안부** |
| **[국정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행안부·기재부** |
| **[국정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 **행안부** |
| **[국정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교육부** |
| **[국정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 **해수부** |
| **[국정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국토부** |

## 전략 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 **민생은 언제나 정부정책의 출발점**이자 **최우선 과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누적된 가계부채는 민생경제 활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 채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

○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 금융문턱을 낮춰 **금융소외계층**을 지원

□ 통신·교통·주거·먹거리 등 **필수 생활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소비 여력도 늘림**으로써 **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 마련

○ 민생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생태계 구조를 혁신**하여 **활기 도는 골목상권** 조성

□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선호지역에 **중산층·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정** 실현

○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등 **다변화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주거급여** 확대, 노후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강화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 **금융위** |
| **[국정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 **금융위** |
| **[국정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 **기재부** |
| **[국정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 **중기부** |
| **[국정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국토부** |
| **[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 **국토부** |

## 전략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 기술탈취, 거대 플랫폼의 횡포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창조와 혁신, 성장 유인이 약화**

○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

□ **대기업**과 **거대 플랫폼**이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

○ **결혼, 장례, 금융** 등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피해 구제 수단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 주권 실현**

□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여 **혁신과 성장 유인**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을 통한 이재명정부의 **'진짜 성장' 달성**을 지원

○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소비·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공정위** |
| **[국정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 **공정위** |
| **[국정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위** |
| **[국정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 **중기부** |

## 전략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 일상화된 기후위기, 생산성 정체 속에서 **식량안보·먹거리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농산어촌**은 고령화·과소화 등 **소멸위기**에 **직면**

□ 정부는 농어업을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재해 등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농어업 정책 대전환** 추진

○ 식량안보 목표에 맞도록 농지 등 자원투입을 의무화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식생활 돌봄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및 농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 유통개혁 추진에 역점

○ 가격안정제 도입 등 **선진국형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마련으로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 공동영농모델을 확산

○ 농어촌 빈집 정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합인프라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산 및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 재생 프로젝트** 추진

○ 총허용어획량 중심 체계로 개편, 스마트 양식 확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고, 어촌 청년 유입 지원, 어촌뉴딜 3.0, 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연안 경제 활성화** 추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농식품부** |
| **[국정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농식품부** |
| **[국정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농식품부** |
| **[국정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 **해수부** |

## 국정목표 ❹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전략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추진하고,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의 대형화·복합화 양상에 따라 **피해 최소화** 필요

○ **「생명안전기본법」**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과 사회적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안전 최우선 기반 구축**

○ 재난담당 인력·조직·산업 등 국가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홍수, 산사태, 싱크홀, 항공사고 등 반복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강화**

□ **통합 범죄예방 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범죄수익 환수제도 정비**, **AI기반 치안 혁신**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 치안 역량 강화

□ **일터**는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존엄**한 공간이어야 함에도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취약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 여전**, **새로운 위험요인** 등으로 **산재보상 기간 장기화**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작업중지권 및 위험성평가 강화,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등 **산재 예방·관리·보상** 전 영역에서 **양적·질적 혁신 추진**

□ **AI기반 해양안전·재난 관리**, 전 해역 **해양감시 범위 확대**, 어선안전 장비 지원, **어선안전보건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해양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행안부** |
| **[국정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행안부** |
|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법무부·경찰청** |
| **[국정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고용부** |
| **[국정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 **해수부** |

## 전략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 사회가 **고령화·다양화** 됨에 따라 질병·장애·노령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에게 돌봄 책임을 지우는 **현 복지 체계**는 **한계**에 봉착

○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되고 방치되는 위기가구를 제때 찾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 지속

□ 누구나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해도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일상을 함께 책임**질 필요

□ 이재명정부는 **개인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돌봄 지원**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 구현**

○ AI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긴급돌봄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소득 안전망 강화**

○ 아동, 노인, 장애인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맞춤형 지원체계 내실화**

○ 영·유아기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마을기업 등 **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 기능 회복 추진

○ 사람·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가칭)**「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공익형 표준수가제 등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 **복지부** |
| **[국정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복지부** |
| **[국정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복지부** |
| **[국정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농식품부** |
| **[국정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기재부** |
| **[국정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 **금융위** |

## 전략 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 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가 본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고령자에게 필요한 의료·간병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점차 가시화**

○ 지방 인구 소멸과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계층간 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공급 위기는 더욱 심화**

□ 이재명정부는 **당면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공공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수립

○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비**, **비급여**,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등 **주요 의료비 부담을 경감**

○ 국가 책임 강화와 지불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 진료권 중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 강화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안전망 내실화**

○ 일차의료 기반으로 국민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한 노화 달성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 **복지부** |
| **[국정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 **복지부** |
| **[국정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 **복지부** |
| **[국정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복지부** |

## 전략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 **저출산·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부담이 커지는 **인구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

□ 이재명정부는 인구위기를 **중차대한 중장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저출생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복지시스템 전환을 병행 추진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거지원,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육아휴직제도 강화** 등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 이미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사회에 적합한 돌봄·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주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기능전환 방안**을 모색

□ **초고령화, 디지털 전환, 외국인력 유입 증가**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기후 위기**와 **디지털 변화**에 대응한 **실효적 대책 마련 시급**

○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면서 중장년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

○ **AI 전환** 및 **기후 위기**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뒷받침**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 **복지부** |
| **[국정88]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 **여가부** |
| **[국정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조실 등** |
| **[국정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 **복지부** |
| **[국정91]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 **복지부** |
| **[국정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 **고용부** |

## 전략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누구나 함께 나아가는 성장,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는 **성장**이 필요하나,

○ 지금 한국 사회는 **기업규모,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되고, **'24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많은 이들**이 **성장의 열매**에서 **소외**

□ 이재명정부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고,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판단,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구축**을 **국정전략**으로 **정립**

○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기본권 보장**, 근로감독행정 혁신 등을 통한 **임금체불 50%(1조 미만) 감축, 공정 임금 제도화, 초기업별 교섭 촉진, 취약종사자**(건설·물류·소송 등) **보호** 등으로 격차 해소

□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일자리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

○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 **육아·돌봄 국가 책임 강화**

□ 모든 국민이 **일자리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급격한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상향 지원, 자발적 이직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으로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강화**

○ **초광역** 및 **기초 단위 연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 **고용부** |
| **[국정94]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 **고용부** |
| **[국정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 **고용부** |
| **[국정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 **고용부** |

## 전략 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폭력 같은 신종폭력의 증가,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혐오와 분열 등 **성평등 의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이재명정부는 성평등을 기반으로 통합**으로 나아가며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 중앙-지자체-민간 성평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평등 정책 기능과 추진체계**를 **강화**

○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 고용유지 및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성 경제활동의 참여를 지원**하여 **성평등한 일터** 구현

○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와 성착취 피해아동 지원,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으로 일상의 안전과 권익 증진

○ 딥페이크 영상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시민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 **여가부** |
| **[국정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 **여가부** |

## 전략 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 **글로벌 AI 패권경쟁 심화**라는 대외적 환경과 **학령인구 급감, 지역소멸 위기**라는 대내적 상황에 **대응할 힘은 바로 '교육'**이므로, 지금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

□ 이재명정부는 **유·초·중등 교육**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것을 우선 과제로 인식

○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AI 융복합 교육과정 확산** 및 **기초학문·인문학 지원 강화** 등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

○ **기초학력지원 및 돌봄·방과후 체계를 강화**하고,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특수교육**과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 기반 확충** 추진

○ 학생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를 마련

○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직무 외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

○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구축**으로 지역성장 기반 마련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교육부** |
| **[국정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 **교육부** |
| **[국정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 **교육부** |
| **[국정102]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 **교육부** |

## 전략 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 **국민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되는 문화**는 누구나 일상에서 누리는 기본적 삶의 권리가 되어야 하나, **소득·세대·지역 등**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 여전**

○ 전 국민이 문화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활동 참여 지원, 지역 문화 환경 개선**

○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이자, 콘텐츠산업의 토대인 문화예술의 가치를 감안, **자유로운 예술의 창작 환경 조성**과 사회적 투자로서 **예술인 복지 확대**

□ K-팝, K-드라마 등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나,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 둔화,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환경 급변, 인공지능 대전환 등 도전적 환경에 직면, **미래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제2도약 필요**

○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세제, 문화 기술 R&D 등 투자 확대, **AI시대 콘텐츠산업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 **글로벌 OTT**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혁신** 및 **공정 생태계 조성, 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및 **AI기술을 통한 혁신** 지원

○ K-푸드, K-뷰티 등 **한류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K-콘텐츠를 넘어, 예술, 생활문화(라이프스타일), 전통 등 K-컬처로 확장, **세계 속 문화적 영향력**을 높여 나가는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동시에 스포츠 강국으로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전문체육인 육성** 및 **복지**, AI 기반 **스포츠 기술개발**과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등 추진

○ **K-관광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한 **K-컬처 연계, 방한 관광 전략 시장 재구조화**, 크루즈·치유 등 **고부가시장 육성**, 지역 관광 특화 및 **산업 AI 전환 지원**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 **문체부** |
| **[국정104] 전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 **문체부** |
| **[국정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 **문체부** |
| **[국정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 **문체부** |
| **[국정107] 3천만 세계인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 **문체부** |
| **[국정108]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방통위** |

## 국정목표 ❺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전략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질적·양적으로 고도화되는 **北 핵·미사일** 및 **재래식 군사력 위협**, 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 등 안보위협 증대

○ 이러한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자주 국방 역량** 강화 필요

□ 북핵·미사일·사이버 등의 위협에 대비한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여 **독자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군을 정예화**

□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고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

□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총체전력 차원의 국방개혁안을 마련·추진**하고,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군 구성원의 **사기·복무의지 고양** 및 군으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방산수출 진흥 및 방산기업 육성을 통해 **K-방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제도혁신을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 **국방부** |
| **[국정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국방부** |
| **[국정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 **국방부** |
| **[국정112]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 **국방부** |
| **[국정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 **방사청** |

## 전략 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의 **경제, 안보, 일상을 지키는 대전제**임에도 불구, 그간 압박에 치중한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 단절, 한반도의 불안정성 고조

○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

□ 남북교류 중단 장기화로 교류기반 소실 및 민족 동질성 약화, **호혜적·안정적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체계를 정비**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 남북간 대화·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강화**

□ 국민의 **민주주의, 평화회복 열망**에 부응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한 대북·통일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확대·제도화**

○ **사회적 대화 활성화**로 대북·통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및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추진

□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하여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 **평화경제특구** 및 **DMZ 생태·관광지구** 조성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경제 거점**으로 발전

○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주요 경협사업**의 **발전적 재개** **▲남-북-국제사회 다자협력** 추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 **통일부** |
| **[국정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 **통일부** |
| **[국정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통일부** |
| **[국정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통일부** |
| **[국정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 **통일부** |

## 전략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흥안보위협**, **기술 경쟁 심화**, **경제안보 위협** 증대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

○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 동맹을 상호 이익의 확대 균형이 가능하도록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고도화** 추진

□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경제안보 조정·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외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외발 리스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글로벌사우스**를 포함한 핵심 협력 지역과의 **외교지평을 다변화**하여 **G7+ 외교 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평화구조 프로세스를 병행 진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실현

□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를 적극 전개함으로써 **K-컬처의 확산,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외교 추진

**< 추진전략별 과제 목록 >**

| 국정과제 | 주관 |
|---|---|
| **[국정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 **외교부** |
| **[국정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 **외교부** |
| **[국정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 **외교부** |
| **[국정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 **외교부** |
| **[국정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외교부** |

## 2. 정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첫 도입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이 2025년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 이 제도는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절차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임

### 1 추진 배경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신설**('25.8.17.시행)

- 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함

> **노인복지법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2 주요 내용

○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관련 정책**

○ (평가주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건복지부 장관**

○ (평가대상·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①**관계 부처·지자체 장 요청 시,** ②**직권**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함

*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평가의 시급성·필요성, 또는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평가 방법·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에 영향 평가에 **필요한 교육이 가능함**

* 보건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및 세부 내용을 추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하여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3 정책적 시사점

○ **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

○ **정책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노인정책영향평가는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재정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 제언 >> [소관부서 : 고령친화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는 **2019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2024년 8월 기준, **전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24.86%**(행안부 인구통계)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인구구조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맞물려 농촌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음

○ 노인정책영향평가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노인인구 통계, 복지서비스 이용률 등 객관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북자치도 노인 관련 조례에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를 정책 수립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임[참고2]

○ **이러한 평가의 대표적 사례로, 전북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마을자치연금' 정책**을 들 수 있음. 이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평가 결과를 표준화된 지표로 삼아 전북 도내 시·군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참고1 노인복지법 시행령 ['25.8.17.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7.>

**제2조(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6. 11.]

**제3조(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8. 12.] <중략>**

## 참고 2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정책영향평가 조례 도입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4. 12. 27.] [2024. 12. 27., 일부개정]

**제3장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16. 5. 9.>

**제8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신규조항 추가 제안(예시)>**

① 도지사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사업 또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책 등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정책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정책의 범위 및 목표
2. 노인의 소득, 건강, 돌봄, 사회적 관계 등 분야별 영향 예측
3. 노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4.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의 개선 방안

③ 도지사는 노인정책영향평가 결과를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 '농촌관광 가는 주간' 시범사업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획된 정책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상품 할인 및 이벤트를 제공함. 단순 관광객을 넘어 농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관계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하여 지자체의 인구 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대안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국민들의 여가 및 여행 소비를 농촌으로 유도하고자 **'농촌관광 가는 주간'** 시범 사업을 기획함

○ 이를 통해 농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2 주요 내용

○ **기간 및 대상**

-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다양한 농촌관광 상품 및 이벤트 혜택 제공

○ **주요 혜택:**

- (상품 할인) 농촌크리에이투어,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등 여행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함
- (특별 상품) '농촌 투어패스' 11% 할인 및 '농촌 워케이션' 참가자에게 1일 5만 원의 숙박비 및 여행자 보험비 지원

* '스타마을 숏폼 챌린지', '농업유산 미스터리 인증샷 챌린지' 등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여 상품 및 경품 제공

○ **부처 협업**: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등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월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함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여행가는 가을(9월)', 고용노동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휴가샵 농촌관광 특별전(10월)', 농촌진흥청 '치유농업과 함께하는 농촌힐링여행(11월)' 등 월별 프로그램 연계

<참고 : 농촌 웰촌(www.welchon.com)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촌체험·여행 공식 플랫폼>

## 3 정책적 시사점

○ 이 정책은 단순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넘어, **관광객을 농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생활인구'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새로운 인구정책과 맞닿아 있음

○ **워케이션**과 같은 프로그램은 통근이나 학업이 아닌 관광 및 업무를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데 **효과적**이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색을 살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에 구축된 관광 플랫폼 등을 연계하여 시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정책제언 >> [소관부서 : 농촌사회활력과]

○ 전북자치도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센터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참참 농촌여행**'(www.jbrun.co.kr)을 운영하며 전북 지역의 농촌 체험, 숙박, 테마 상품 등을 홍보하고 있음

○ 또한, 도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 인구 대신 **'생활 인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수립, 2025년 5월 **'전북사랑도민제'와 연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전북 외 지역 거주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전북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관광 가는 주간**' 시범정책은 전북의 **생활인구 확대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이 기간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시기에 맞춰 **'참참 농촌여행'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면, 두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강진의 '반값 관광'**과 같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숙박과 연계하여 관광 비용을 할인해 주는 강진 모델을 도입하여 **전북만의 특색 있는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외,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 체류형 농촌체험 프로그램', '워케이션(Workation)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수도 있음. 이를 통해 단순 방문을 넘어 실제 생활 인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참고 농촌관광상품 할인 혜택 및 행사 일정(안) ('25. 8.~11.)

| 구분 | 주요내용 | 행사 기간 | 비고 |
|---|---|---|---|
| 농촌 관광 상품 할인 | ■ 농촌크리에이투어 20개지역 관광상품 30~50% 할인 | ■농촌관광가는 주간 (8월~11월) | |
| | ■ 소규모(가족, 친구, 연인 등)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40개 대표 온라인 상품 30~50% 할인 | ■농촌관광가는 주간 (8월~11월) | |
| | ■ 농촌 투어패스 4개 지역 11% 상품할인 | ■농촌관광가는 주간 (9월~11월) | |
| | ■ 85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 및 숙박 상품 최대 30% 할인 및 해시태그 이벤트 | ■농촌관광가는 주간 (9월~11월) | |
| | ■ 농촌 워케이션 사용자 1일 5만원 할인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지원 | ■ 상시(9월~11월) | |
| 이벤트 | ■ 여름상품 리뷰&캐시백 이벤트: 농촌체험휴양마을(85개소) 이용 리뷰 작성시 캐시백(최대 4만원 혜택) | | |
| | ■ **스타마을 숏폼 챌린지 공모전**: 스타마을 20개소 중 1개소 이상 방문하여 숏폼영상 제작 및 SNS 업로드 | ■8.11(월)~10.12(일) | 상금·경품 총 235만원 상당 |
| | ■ **농업유산 미스터리 인증샷 챌린지**: 농업유산 관련 사진을 공개, 동일 구도 인증샷 지정 해시태그 포함 SNS 업로드 | ■ 9.8(월)~11.2(일) | 상금·경품 총130만원 상당 |
| | ■ **농촌 투어패스 리뷰 이벤트**: 투어패스 사용 후 리뷰 작성 시 리워드 제공(기프티콘 등) | ■농촌관광가는 주간 (9월~11월) | |
| 부처 협업 | ■ **여행가는 가을**: 제시하는 주제에 맞는 사연을 공모·선정하여 전문 스냅작가와 스타마을에서 스냅사진 촬영권 증정(6매) | ■농촌관광가는 주간 (9월, 9.8~9.21)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공사 협업 (여행가는 가을) |
| | ■ **휴가샵 농촌관광 특별상품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휴가샵 상품관에서 가을휴가철 특별상품 판매 | ■농촌관광가는 주간 (10월) | 고용노동부 협업 |
| | ■ **치유농업과 함께하는 농촌힐링여행**: 치유농업프로그램 체험희망자 무료체험권 증정(40매) | ■농촌관광가는 주간 (11월) | 농촌진흥청 협업 |

# 4.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관계부처 합동)

◇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PF 유동성 공급 등 부동산 공급여건을 개선

◇ 예산 신속집행 및 민자 활성화를 통해 필요한 SOC를 조기 공급하고,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 등 제도개선

◇ 자재수급 안정화, AI·스마트 기술 도입, 외국인력 활용, 규제개선 추진 등을 통해 공사비 안정화

# Ⅰ.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평가

## 1 최근 동향

### □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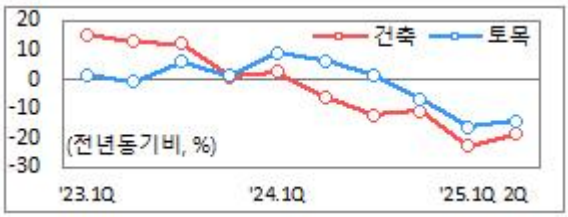
○ 건축은 '24.2분기 이후, 토목은 '24.4분기 이후 감소세 지속

건설투자 추이




* 출처: 한국은행

건설기성 부문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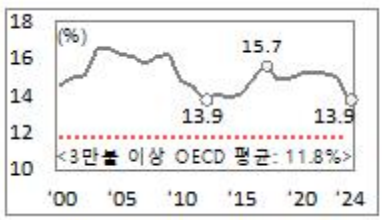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 □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7년 15.7% → '24년 13.9%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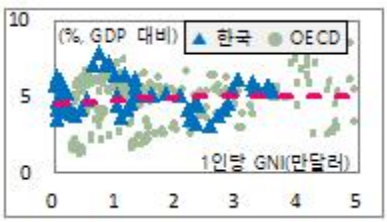
○ 다만, 비주거 부문 중심으로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GDP 대비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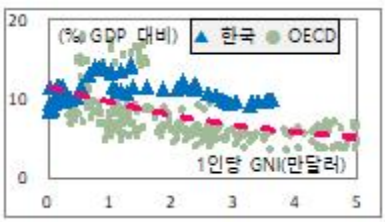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OECD

소득 수준별 주거투자




* 출처: OECD

소득 수준별 비주거투자




※ '70~'23년 OECD 국가의 1인당 GNI 수준별 건설투자 수준 측정
추세선은 1인당 GNI 수준별 평균 건설투자 수준

## 2 부진 원인

### □ '22년 이후 금리 · 공사비 상승으로 누적된 과잉투자 조정

○ 금리 상승(기준금리 '21말 1.0→'23.1월 3.5%), 주택가격 하락, 분양시장 둔화 등으로 **건설수주 감소** →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에 **영향**

* 전국 APT 매매가격 증감률(%): ('20)7.6 ('21)14.1 ('22)△7.6 ('23)△4.8 ('24)0.1

** 건설수주(동기비, %): ('22.3Q)30.2 (4Q)△17.2 ('23.1Q)△14.5 (2Q)△31.2 (3Q)△43.2 (4Q)23.2

○ 원자재가격 상승, 인력 부족 등으로 **자재비·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건설 프로젝트 **사업성**이 **악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화**

* 공사비지수('20=100): ('21)111.5 ('22)123.8 ('23)127.9 ('24)130.1 ('25.6)131.1

### □ 특히,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으로 신규 건설투자 수요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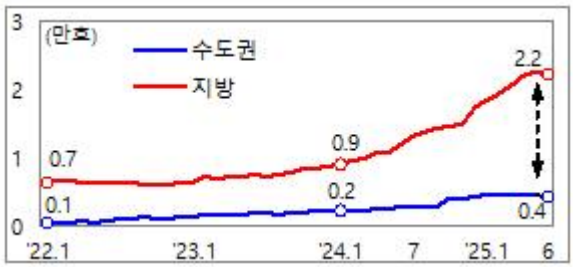
○ 비수도권 인구 감소('17년 이후 △93.6만명)에 따른 **지방 주택수요 둔화** 등으로 주택 **초과공급**이 **심화**되며 지방 **미분양 증가**

**비수도권 인구 및 주택재고 누적분 추이**




* 출처: 통계청

**지역별 준공후 미분양**




* 출처: 통계청

## □ 계획된 투자의 이행을 저해하는 공급측면의 제도적 장벽도 상존

○ **(건축) 취약한 PF구조, 각종 부담**이 신속한 사업진행 저해

- **PF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22년 이후 **연체율 증가****하며 PF 부실이 증가하고 **취약분야**(브릿지론, 중소건설사 등)도 **자금조달 애로**

* 부동산PF 자기자본 비율(%): (한국)5% 이내 (선진국)3~4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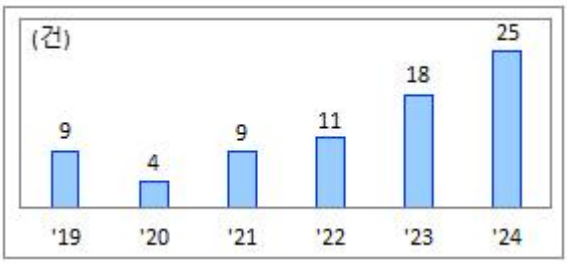
** PF대출 연체율(%, 기말 기준): ('21)0.37 ('22)1.19 ('23)2.70 ('24)3.42 ('25.3월)4.49

- 개발부담금(지가 상승분의 25% 부과 중) 등 **재무적 부담**과 함께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절차 지연**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도 **병존**

○ **(토목)** 공공부문에서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유찰**이 **증가**하고, 편성된 **SOC 예산 미집행**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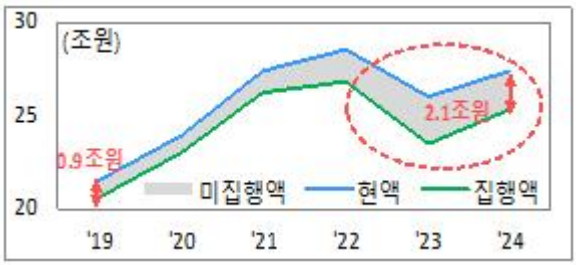
* SOC예산 현액 대비 미집행액(%): ('19)4.1 ('20)3.8 ('21)4.3 ('22)5.9 ('23)9.6 ('24)7.8

**공공공사**(기술형 입찰) **유찰건수**




* 출처: 조달청

**SOC 예산 미집행 추이**




* 출처: 기재부

# Ⅱ. 추진 전략

◇ 부진한 지방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SOC 조기 확충, 공공공사 제도개선, 공사비 안정화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건설투자 부진 장기화 : '24.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

* 건설투자(전년비, %): ('24.1Q)1.6 (2Q)△1.2 (3Q)△6.2 (4Q)△6.4 ('25.1Q)△13.3 (2Q) △11.7

**공사비**

▸ '22년 이후 공사비 상승으로 누적된 과잉투자 조정
* 건설공사비: '20년 대비 31.1% 증가

**건 축**

▸ 지방부동산 미분양 심화 * 지방준공 후 미분양: ('22.2월) 0.7→('25.6월) 2.2만호
▸ 취약한 PF 구조, 재무적·행정적 부담으로 신속한 사업진행 저해

**토 목**

▸ 공사비 상승에 따른 ①대형 공공공사 유찰·지연 등 집행 부진 + ②신규착공 감소
* ①유찰건수 ('19) 9건 → ('24) 25건 / ② SOC예산 미집행률 ('19) 4.1% → ('24) 7.8%

##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 (1) 지방 수요 보완

-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 확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연장
- LH 미분양 매입물량을 '26년까지 0.8만호로 확대

### (2) 공급여건 개선

- PFV에서 프로젝트 리츠로 사업유형 전환 허용
-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 확대

##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 (1) SOC 신속 집행

- 공공 SOC 사업비 연내 최대한 집행
- 민자사업 확대 및 사업여건 개선
- GB해제, 첨단산단 조성 등 입지조성 가속화

### (2) 공공공사 유찰 · 지연 방지

- SOC 예타 기준 완화 검토
- 공종별 예타 단가기준 현실화
- 총사업비 자율조정 확대 및 공백기간 간접비 보상

## 공사비 부담 완화

- AI 기반 자재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재별 수급안정화 협의체 법적상설기구화
-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비자신설(E-7-3)로 숙련인력 유치,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범위 개선
- 건설AI 연계기술(AX), 개발 탈현장건설 등 AI·스마트기술 도입

# Ⅲ. 건설투자 보강방안

## 1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 (1) 지방 수요 보완

#### □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특례 제공 확대

○ **(세컨드 홈 지원확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세제지원 확대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 완화**

* (당초) 인구감소지역 → (변경)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 공시가격 4→9억원 이하
취득세 : 취득가액 3→12억원 이하(단, 감면한도 최대 150만원)

**< 현행 세컨드 홈 세제지원 내용 >**

❶ 양도세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❷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❸ 재산세 : 기존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❹ 취득세 :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 감면(법 25% + 조례 25%)

○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소재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진작

❶ **(아파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

* 요건: 법령 개정 완료 후 ~ '26.12. 기간 내 등록한 아파트

❷ **(전체 주택)**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주택(6·10년)에 대해 1년 한시로 취득세 중과배제(매입형) 및 취득세 주택 수 제외(건설·매입형)

○ **(미분양 취득 지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지방주택 취득 지원

❶ **(1주택 특례)**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25→'26)

* 요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❷ **(양도·종부세 중과 배제)** 양도·종부세 중과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연장**('25→'26)

❸ **(취득세 지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최대 50% 감면(개인 취득시 한정) 시행(1년 한시)**

* 요건: 법령 개정 완료 후 ~ '26.12. 기간 내 구입, 취득가액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현행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세제지원 내용 >**

❶ 양도·종부·취득세 공통 : 세율 적용시 신규 취득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
❷ 양도세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❸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❹ 취득세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년이상 임대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CR리츠 지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 기존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세제혜택 적용되도록 지원기간 설정

## □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하여 지방 미분양 부담 완화

○ **(LH 직접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0.8만호*로 확대,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 → 90%로 상향

* '25년 0.3만호+'26년 추가 0.5만호

○ **(안심환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HUG가 **한시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권리*** 부여(총 2.4조원, '25.下~'28, 1만호)

* 분양가의 50%만큼 유동성 지원 → 준공 후 1년내 실비용 가산, 환매옵션 부여

- 사업부담 경감을 위해 HUG의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사업 주체의 **환매 시 취득세 면제**

○ **(국유기금)**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 악화해소를 위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 등 **통합 청·관사 활용** 방안 **신규 도입***

* ('25.下) 매입기준·절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6.上) 유휴 부동산 조사 및 청·관사 수요 매칭

## (2) 공급여건 개선

### □ (PF 정상화)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 공급,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 지속

○ **(정상 사업장)** **PF 단계별**(브릿지론-본PF)로 **새로운 유동성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PF 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

- **(브릿지론)** 우수한 사업자에 **토지매입 단계(브릿지론)**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도입(0.8조원, LH)

- **(본PF)** 기존 PF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건설사**에 대해 **2조원 규모**의 **특별보증 신설**(2금융권 포함, HUG)

  * 기존에는 은행·보험회사의 중대형 건설사(시공능력 100위 이내) 대출 보증 중심으로 운영

- **(사업유형 전환)** 분양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PF 사업(PFV)**을 **공모·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 허용**(요건충족시)

  * PFV는 저자본-고부채 구조로 개발 후 매각·분양이 주목적인 반면,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 전환 시 사업주체가 동일하므로 과세 없음

○ **(부실 사업장)** 공매가격 조정 등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지속 추진** 및 **금융규제 완화 연장**

  * 정리·재구조화 계획 대상 23.9조원('24.9월말 기준) 중 '25.上까지 12.6조원 완료

-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에 대한 **공매(HUG) 반복 유찰** 시 **최초 공매가격**으로 **재설정**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춰 **공매가 조정**

  * 최초 공매가(100억) → 유찰로 50억 도달시: (현행) **차기 공매시 100억**으로 다시 진행 → (개선) 시장상황에 맞춰 **공매가 재설정**(HUG 내규 개정)

-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한시 운영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10건)**를 **연말까지 연장***

  * 하반기 중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조치 종료 시기 판단 예정

## □ [지연해소] 민간은 지연 원인 해소, 공공은 국유지 개발 등 공급 확대

○ **(민간)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연 원인 해소

- **(개발부담금)**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을 **'25, '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

* 현재 '24년 인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한「개발이익환수법」계류 중('24.9 발의)

- **(절차간소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을 타 법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 추진('25.下)

* (현행)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포함

** (예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도시·군관리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 포함

- **(보증수수료 할인) 지방 건설현장**의 **영세 전문건설사***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할인**(△10%) 추진(전문건설공제조합, ~'26년)

* 중소 종합건설사의 지방 사업장 대상으로는 의무보증 수수료 할인 중(건설공제조합)

○ **(공공)** 도심 유휴부지 등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

* '35년까지 기계획된 2만호 신속 공급 + 추가 발굴한 1.5만호 신규 공급

# 2 공공공사 지연 방지 · 신속화

## (1) SOC 신속집행

### □ (공공 SOC 확대) 연내 집행가능 소요를 최대한 발굴하여 26조원+α 투자

○ (SOC) 교통망 고도화, 노후 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조기 집행 가능소요를 추가발굴하여 추경 반영(추경 1.7조원 포함 26.0조원)

-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의 연내집행 완료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집중관리기간 운영 등 차질없이 사업추진

* 국토부는 상반기까지 SOC 본예산 12.6조원 집행(전체 18.5조원중 68.2%)하고, 추경예산(2차)도 금년 3분기까지 68.6% 수준 집행추진

(단위: 억원)

| 주요사업 | '25년 | 추경 | 3Q 집행목표 | 추진계획 |
|---|---|---|---|---|
| ①평택-오송 복선화 | 3,500 | 1,000 | 100% | · 선금지급(~9월), 작업장 확대(~11월) 등 신속집행 |
| ②호남고속철도 | 1,386 | 1,000 | 80% | · 발주 및 입찰공고(~8월) 등 행정절차 신속추진 |
| ③도시철도노후 시설개선 | 525 | 201 | 100% | · 행정절차 신속이행 등 조속 교부(~9월) |

○ (공공기관) 토지개발을 위한 용지매입(LH), 고속도로 시설개량(도공) 등 '26년 사업 물량을 연내 당겨 집행(+0.4조원)

○ (중장기투자) 중장기 철도·도로망 구축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연내 마련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5.下),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6.上) 등
** 대상사업, 재원 조달방안, 추진절차 등 포함

### □ (민자 활성화) 민자사업 확대 및 사업 여건 개선

○ (사업 분야 확대) AI인프라 등 新사업 분야 확대,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활성화, 재정사업 민자전환('26)

* 총사업현황('25.7 기준, KDI) : 전체 853건 中 교육 306건(36%), 환경 223건(26%), 도로 103건(12%), 국방 93건(11%), 문화관광 42건(5%) 등 추진 중

○ (사업 여건 개선)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투자자의 회계 처리를 명확화*하고, 민간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25.下)

* 발행자에게 원금 상환 성격의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선택 가능(기재부, 회계기준원)
** 건설·운영비 부담 완화, 금융지원 등

## □ [입지 조성] GB해제 등 입지 조성으로 개발사업 조속 추진

○ **(개발제한구역) 전략사업**(15곳*)의 대체GB 지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신속한 GB해제 절차 완료** 지원

*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에서 예외 인정 및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가능
(부산권 3곳,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대전권 1곳, 울산권 3곳, 창원권 4곳 등 총 15곳)

- **국립공원, 국·공유림**을 **대체 GB**로 **지정** 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기존 공원·산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25.3분기)

○ **(첨단산단)** 예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세제지원 연장**을 통해 **15개 첨단국가산단**의 **조기 착공·가동** 지원

- **(예타)** 공공 예타 대상사업 수시 선정, 조사기간 단축(7→4개월)등을 통해 **연내 예타 완료** 추진(광주·안동 등 4곳)

※ **예타면제 지역**은 **산단계획 승인**(고흥·울진), **토지보상**(용인) 등 절차 **연내 착수**

| 지역 | 추진계획 |
|---|---|
| 용인<br>※ 예타면제 완료 | ▸ **토지보상 개시**(6.9~) 및 조성공사 발주(3분기) → **'26년 착공** 목표 |
| 고흥·울진<br>※ 예타면제 완료 | ▸ 연내 산단계획 승인 신청 → **'26년 산단계획 승인** |
| 대구<br>※ 예타 통과('25.8월) | ▸ '26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 → **'27년 산단계획 승인** |
| 광주·안동<br>완주·홍성 | ▸ **예타 신속 처리**를 통해 **'25.下까지 예타 완료** 추진 |
| 대전·강릉·경주·익산<br>·창원·청주·천안 | ▸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예타 착수** 추진('25.下~) |

- **(세제)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단**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일몰 연장('25→'28년 말)

*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25년 말 일몰 예정)도 **연장 검토**

○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지 민간분양 제도**를 **정비***하여 **입주기업**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 **건설투자 촉진**

* 국유지 분양 절차 구체화, 토지취득자 입주계약 체결 의무 신설, 토지 취득 시 일정기간 의무보유(처분제한 기간) 신설, 입주기업 관리체계 강화 등(「자유무역지역법」 개정)

## [2] 공공공사 유찰·지연방지

### □ [예타제도 개선] 예타대상 기준 완화 및 지방 성장 우대 추진

○ **(예타기준 완화)** 사회기반 인프라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국가재정법 개정)

* 예타 대상기준(총사업비/국비): (현행) 500/300억원 → (개선) 1,000/500억원

○ **(지방우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 개편* 추진('26.上)

*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지속 확대(0→30~40%)하고, '19.4월 수도권·비수도권 평가체계 이원화를 기추진

### □ [사업구상~계약단계] 공사 유찰 방지를 위해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

※ 사업추진단계: '사업구상' → '예타' → '기본계획수립' → '기본·실시설계' → '발주·입찰' → '시공'

○ **(사업구상~예타단계)** 총사업비 규모 산정시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을 재정비*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도로, 철도 비용부문) 개정
↳일반철도·국도: '25년 하반기, 고속도로: '26년 상반기 완료 계획

- 사업구상 단계와 예타조사 착수 시점 간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물가기준 개선*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현행) 원칙적으로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
→ (개선)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 적용하되, 공사비지수와의 격차가 4% 초과시 평균값 적용

|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A) | 공사비지수(B) | 물가반영기준 |
|---|---|---|
| 5% | 15% | (현행) 5%<br>* (A), (B) 중 낮은값 |
| | | (개선) 10%<br>* (B)-(A)>4% → A, B 평균값 |

**< 현 행 >**

*** 현행 물가반영기준 5%적용**
**: 총사업비 1,000 → 1,050억원**

1,000 (사업구상 단계) → 물가상승 ⇨ 1,050 당초대비 +5% (예타착수 단계)

**< 개 선 >**

*** 개선 물가반영기준 10%적용**
**: 총사업비 1,000 → 1,100억원**

1,000 (사업구상 단계) → 물가상승 ⇨ 1,100 당초대비 +10% (예타착수 단계)

○ **(발주·입찰단계)**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 **확대**('24315개→'25569개)

* 공사비 영향력이 높은 공종(사용빈번, 물량多)을 선정하여 조사주기를 단축하여 관리

- **지방계약**에서도 「국가계약예규」에 준하여 기술형 입찰에서 **입찰안내서 사전공개 의무화** 및 **사전설명회 개최**하여 준비기간 부여

○ **(낙찰단계)** 중소업체 애로해소를 위해 **국가계약** 상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추진(+2%p 수준)

*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95점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
다만, 낙찰하한율(입찰가/예정가)이 존재하여, 다수업체가 가격을 낮춰 낙찰하한율에 투찰

## □ [시공단계] 총사업비 조정 자율성 확대 및 공백기간 간접비 보상

○ **(총사업비 자율조정)**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 검토** → **연내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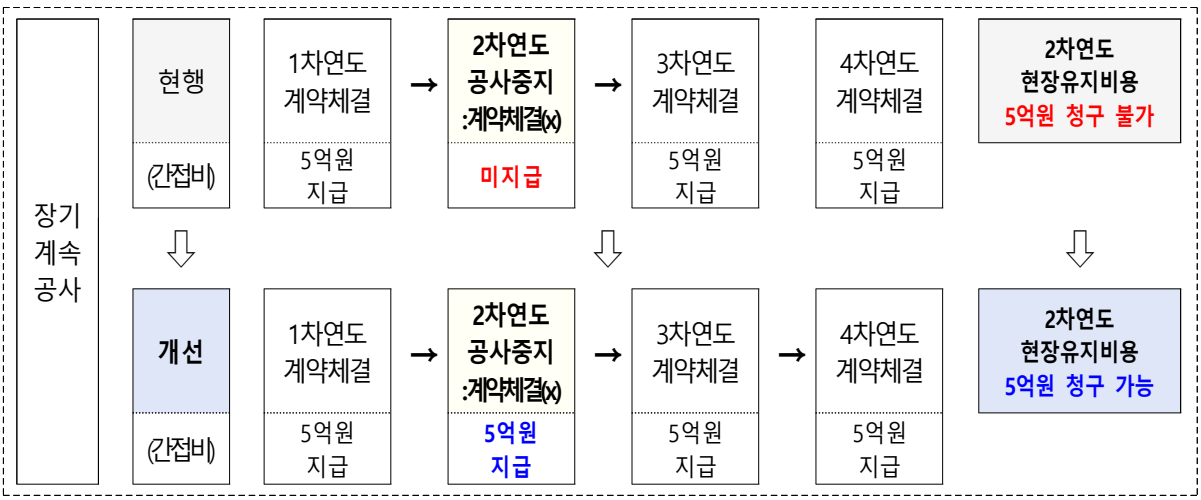
*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시공단계 설계변경 항목(지반여건 등)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생략하고, 주무부처 책임하에 조정하도록 허용

** 공공지장물 이설비 등 총사업비 과다 증액 우려가 낮은 사항 중심

○ **(간접비보상)**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책임**으로 발생한 **공백기간**에 지출한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비용**을 **보상**토록 **제도개선***

* 장기계속공사의 공백기에 발생하는 간접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근거 마련(국가계약법 개정)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 사례>**



# 3 공사비 부담 완화

## □ [자재] 자재 수급 안정화 및 골재채취 부담완화

○ **(자재수급 안정화)** 주요 건설자재의 지역별 **수급 및 재고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5.下, 조달청 ISP)

* 현재 조달청이 주요 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4종) 대상 수급동향(핵심 관급공사 현장별 수급상황, 지역별 특이사항 등)을 수기 모니터링 중인 것을 AI 기반 통합전산시스템으로 확대·개선

- 자재 수급안정화 협의체의 **실효적인 논의**를 위해 **자료요청 권한** 등 **법적근거***를 마련('25.下)하고, **관리대상 자재 확대 운영방안** 마련('26)

* 협·단체 등 참석대상 규정, 국토부 자료요청 권한 신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5.下)

○ **(바다골재)** **골재 채취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골재채취 시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도 **연내 마련**

* 안산·태안·군산·영광(예정지) 신규 지정, 서남권 EEZ(단지) 채취지역 확보 추진

** 이원화(예정지·단지)된 채취지역을 단지로 일원화하여 협의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 검토

○ **(산림토석)**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해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면제기준 완화****(10만㎥ → 20만㎥)

* 산지에서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한 토석을 외부로 반출할 때 받는 인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5.12)

## □ [인력] 해외인력 현장활용 확대 및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 **(해외인력)**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을 추진하여 **해외 숙련인력 도입** 활성화('25.下 비자·체류정책협의회 심의 추진)

- **외국인력**(E-9)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25.下)

* (현행)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단순 보조업무 수행
(개선) 단순보조 업무의 범위를 기능등급제의 초급 수준의 업무범위로 명확화

○ **(기능인등급제)** 청년층 진입 유도, AI 경력설계 등을 활용한 **숙련인력 양성** 및 **기능인 우대기반** 구축을 위해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 | |
|---|---|
| **청년 유입** | ■ 특성화고 졸업생 및 제대(예정) 군인 대상 **기초기능교육 신설**('25.下) |
| **경력설계** | ■ 개인별 맞춤형 성장경로를 제공하는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25) |
| **패스트트랙** | ■ **중급**에서 **고급**으로 **조기승급 가능**하도록 개선(6년 → 1년+숙련도 평가, '27) |
| **등급별 교육** | ■ **등급별 승급** 및 **관리자 교육 확대**('24년 9개 직종 480명 → '25년 12개 직종 900명) |
| **인센티브** | ■ 시공능력평가 시 **기능등급인 고용실적**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반영**('25),<br>입·낙찰시 **건설인력 고용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검토 및 반영**('26~) |

## □ [기술 · 규제] AI · 스마트기술 건설현장 도입 및 관련 규제 완화

○ **(AI 건설)** 설계·시공기준 디지털 전환, 건설현장 AI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건설 AI 기술 도입·확산**

| | |
|---|---|
| **AI 설계** | ■ **AI설계 자동화** 기반마련을 위한 **설계·시공기준 디지털 전환**(~'30) |
| **AI 산재예방** | ■ 자동 경고기능 탑재 **자능형 CCTV** 등 안전관리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6~) |
| **AI 교통망** | ■ **AI를 활용**한 **교통흐름 신호체계 기술** 등을 **도로교통망**에 **적용**('26~) |
| **AI 도로관리** | ■ AI 포트홀 탐지 시스템, 비탈면 IoT, 스마트 CCTV 등 도입 확대 |

○ **(스마트건설)** **탈현장건설**(OSC)* 공법 도입 등 **스마트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R&D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추진

* Off-Site Construction: 공장 등 외부에서 부재·건축물을 선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 공법

| | |
|---|---|
| **기술개발** | ■ 고층화·단지화 **R&D**('25~'29년, 250억원) 및 **실증단지 구축**(GH, '29년 준공) |
| **인센티브** | ■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등 **완화*** 및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편의성 개선****<br>* 주택법 개정 추진 ** 공업화주택 인정내용의 변경·기간연장시 절차간소화 |
| **규제개선** | ■ 부재단위로 적용하는 **내화기준***을 **모듈단위**로 **통합적용**<br>* 현재 기둥·보 등 부재 단위로 최대 3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

# Ⅳ. 향후 추진계획

| 추진 과제 | 소관부처 | 추진일정 |
|---|---|---|
| **1.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 | |
| **(1) 지방수요 보완** | | |
| ■ 세컨드홈 세제지원 특례 대상지역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 완화 | 기재부<br>행안부 | '25.下~ |
| ■ 인구감소지역 한정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제도 한시 복원(1년) | 국토부 | '25.下 |
|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 복원 | 행안부 | '25.下 |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제특례 적용 기한 연장(~'26) | 기재부<br>행안부 | '25.下 |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최대 50% 감면 한시 시행(1년) | 행안부 | '25.下 |
| ■ CR리츠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 기재부 | '25.下 |
| ■ LH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 및 매입상한가 상향 | 국토부 | '25.下 |
| ■ 준공전 미분양 사업장에 HUG가 한시 유동성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권리 부여 | 국토부 | '25.9~ |
| ■ 국유기금을 통한 유휴 민간건물 매입 등 통합 청관사 활용 방안 도입 | 기재부 | '25.下~ |
| **(2) 공급여건 개선** | | |
| ■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도입 | 국토부 | '25.7~ |
| ■ 중소건설사 비은행권 PF에 대한 특별보증 신설(HUG) | 국토부 | '25.9~ |
| ■ PF사업(PFV)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 | 국토부 | '25.下 |
| ■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의 공매 반복 유찰 시 공매가 조정 | 국토부 | '25.下 |
| ■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확대<br>('24년 인가사업 → '25, '26년 인가사업) | 국토부 | '25.下~ |
| ■ 「주택법」 상 통합심의 대상 확대 | 국토부 | '25.下~ |
| ■ 지방 건설현장 영세 전문건설사 대상 보증수수료 할인 | 국토부 | '26 |
| ■ 국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 | 기재부<br>국토부 | '25.下~ |
| **2.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 | |
| **(1) SOC 신속집행** | | |
| ■ 추경 예산 신속집행 | 국토부 | '25.下 |
| ■ 공공기관 '26년 사업·추경사업 연내 조기집행 | 국토부 등 | '25.下 |
| ■ 중장기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 국토부 | '25.下~ |
| ■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국토부 | '25.下 |
| ■ 민자사업 분야 확대 및 운영형 사업 활성화 | 기재부 | '26~ |
| ■ 민자사업 인프라펀드 투자자 회계처리방식 명확화 | 기재부<br>(회계기준원) | '25.8 |

| 추진 과제 | 소관부처 | 추진일정 |
|---|---|---|
| ■ 민자사업 민간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기재부 | '25.下 |
| ■ 전략사업 대체GB 신속 지정을 위한 행위규제 개선 | 국토부 | '25.下 |
| ■ 첨단산단 연내 예타 완료 추진(4곳) | 국토부 | '25.下 |
| ■ 지역산단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 기재부 | '25.下 |
| ■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지 민간분양 제도 정비 | 산업부 | '25.下 |
| **(2)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 | |
| ■ 공종별 예타단가 기준 재정비 | 기재부 | '26.上 |
| ■ 예타조사 총사업비 산정 단계 적용 물가기준 개선 | 기재부 | '25.下 |
| ■ 표준시장단가 주요 관리공종 확대 | 국토부 | '25.下 |
| ■ 지방계약 입찰안내서 사전공개 의무화 추진 | 행안부 | '25.上 |
| ■ 중소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추진 | 기재부 | '25.下 |
| ■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 확대검토(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 기재부 | '25.下 |
| ■ 장기계속공사 공백기간 간접비 보상(국가계약법 개정) | 기재부 | '25.下 |
| **3. 공사비 부담 완화** | | |
| **(1) 자재** | | |
| ■ AI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ISP | 조달청 | '25.下 |
| ■ 자재수급협의체 관련 법적근거 마련 | 국토부 | '25.下 |
| ■ 자재수급협의체 관리대상 자재확대 운영방안 마련 | 국토부 | '26 |
| ■ 바다골재 채취지역 신규 지정 | 지자체 | '25.下~ |
| ■ 바다골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국토부 | '25.下 |
| ■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심의면제기준 완화 | 산림청 | '25.下 |
| **(2) 인력** | | |
| ■ 내국인 기피공종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 검토 | 법무부 | '25.下 |
| ■ 외국인력(E-9) 관련 비자 매뉴얼 개정 추진 | 법무부 | '25.下 |
| ■ 특성화고 졸업생 및 제대 군인 대상 기초기능교육 신설 | 국토부 | '25.下 |
| ■ 기능인등급제 관련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 국토부 | '25.下 |
| ■ 기능인등급제 조기승급 제도 마련 | 국토부 | '27 |
| ■ 시공능력평가 시 기능등급인 고용실적 반영 | 국토부 | '25.下 |
| ■ 입·낙찰시 건설인력 고용평가 반영 | 국토부 | '26 |
| **(3) 기술·규제** | | |
| ■ AI설계 자동화 등 설계·시공기준 디지털 전환 | 국토부 | '30 |
| ■ 안전관리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국토부 | '26~ |
| ■ AI교통흐름 신호체계 기술 도로교통망 적용 | 국토부 | '26 |
| ■ AI 포트홀 탐지 시스템, 버틀면 IoT, 스마트 CCTV 도입 확대 | 국토부 | '26 |
| ■ 고층화·단지화 R&D 및 실증단지 구축 | 국토부 | '29 |
| ■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완화,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 국토부 | '25.下 |
| ■ 내화기준 부재단위→모듈단위 통합적용 | 국토부 | '25.下 |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건설정책과]

○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2025.08.)에 따르면 6월중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4.2% 감소하였음(5월 +191.8% → 6월 -34.2%)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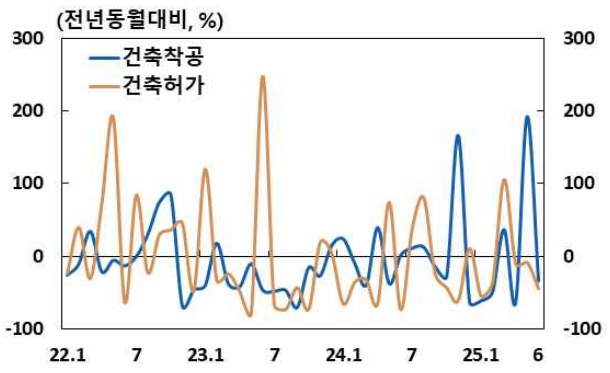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 | 2022 | 2023 | 2024 | 2025 | | | | |
|---|---|---|---|---|---|---|---|---|
| | | | | 1분기 | 2분기 | 4월 | 5월 | 6월 |
| ■ 건 축 착 공 | -15.0 | -31.7 | -1.9 | -23.7 | -6.6 | -63.6 | 191.8 | -34.2 |
| (면 적, 천㎡) | (4,316) | (2,947) | (2,892) | (452) | (724) | (166) | (449) | (109) |
| 주 거 용 | -18.7 | -33.2 | -24.2 | -14.1 | 15.4 | -85.0 | 1016.1 | -63.9 |
| 상 업 용 | 20.0 | -40.7 | -7.3 | -20.0 | -12.0 | -29.9 | 8.4 | -7.7 |
| 공 업 용 | 15.7 | -12.0 | 24.7 | -50.7 | -67.3 | -80.4 | -70.1 | -18.2 |
| ■ 건 축 허 가 | 5.5 | -26.1 | -37.5 | -0.1 | -21.5 | -10.0 | -7.9 | -44.2 |
| (면 적, 천㎡) | (6,341) | (4,688) | (2,931) | (698) | (561) | (130) | (287) | (144) |
| 주 거 용 | 31.8 | -37.9 | -52.8 | 41.4 | 14.5 | 1.6 | 78.8 | -63.3 |
| 상 업 용 | -10.1 | -31.2 | -18.8 | 15.0 | -30.8 | 3.3 | -32.2 | -48.7 |
| 공 업 용 | 28.7 | -15.5 | -18.2 | -31.1 | -2.7 | -36.3 | -15.2 | 53.3 |
| ■ 미분양 주택(호)[1] | 2,520 | 3,075 | 2,743 | 3,228 | 2,976 | 3,336 | 3,124 | 2,976 |
| 준공 후 미분양(호)[1] | 85 | 150 | 403 | 520 | 1,021 | 737 | 1,049 | 1,021 |

주: 1) 기말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또한 6월말 기준 미분양주택 수는 2,976호로 전월(3,124호) 대비 148호 감소하였고,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는 1,021호로 전월(1,049호) 대비 28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2년 대비 높은 수준임

**건축착공 및 허가 증가율**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자료: 국토교통부

○ 그간 건설산업 불황이 이어져 특히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 물량 급감, 자금난 등 큰 위기에 노출됐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음

○ 이번 대책은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방지·신속화 △공사비 부담완화 등 건설투자 보강을 위한 총 56개 과제로 구성됐음

○ 금번 발표에 따라 지방 주택 세부담 완화 등 특례 제공 확대를 통한 지방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고질적인 지방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은 건설사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여짐

○ 전북자치도에서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건설업체 위기 극복과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목표로 ▲지역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지역업체 보호 및 우대제도 확대 ▲건설사 경쟁력 강화 ▲수주지원 및 민·관 상생협력 강화 등 핵심 전략을 마련하였음

○ 나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신규 발굴 추진하며, 지역업체 보호 및 우대제도를 한층 강화

○ 특히,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북특별법」 특례를 반영해 공공공사 공동계약 시 지역업체 최소 지분율을 30%에서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과 발맞춰 예산 신속집행 및 민자 활성화를 통한 SOC 조기공급, 공공공사 유찰·지역 방지를 위한 공사비 현실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5. 5만 마을기업인의 15년의 기다림 「마을기업법」 공표(행전안전부)

◇ 15년간 지침으로 운영된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주체 중 유일한 법적 근거 부재 해소
◇ 근거 법률 공백과 지난 2년간 예산 축소로 마을기업 74개(4.1%) 감소
◇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 우대 등을 통해 지역 활력 부여 기대

## 1 추진배경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임

○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음

○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

* (22대민주) 박정·한병도·신정훈 의원, (22대국힘) 이성권·정동만·이달희·조승환 의원

## 2 주요 내용

○ 「마을기업법」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

○ 마을기업법은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2026.8.15.) 시행될 예정

## 3 실태조사 결과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25년 실태조사: ▲기간: '25.3.21.~6.19. ▲대상: 전국 마을기업 전수 ▲방법: 서면 문답 ▲항목: 마을기업 지정일, 출자인원, 법인형태, 업종, 주생산품, 매출액, 고용 수, 공헌 등

○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 수는 1,726개로 전년(1,800개) 대비 4.1% 감소했고, 총 매출은 3,070억 원으로 전년(3,090억원) 대비 0.6% 감소해, 법적 근거 미비와 지난 2년간 재정지원 축소로 인해 마을기업 규모와 활동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음

**< 시도별 마을기업 현황 >**

(단위: 개소)

|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24년 | 1,726 | 84 | 61 | 97 | 57 | 66 | 63 | 48 | 33 | 193 | 139 | 92 | 155 | 117 | 209 | 148 | 121 | 43 |
| '23년 | 1,800 | 95 | 72 | 101 | 58 | 72 | 63 | 51 | 35 | 208 | 142 | 94 | 162 | 120 | 209 | 148 | 127 | 43 |
| 증감 | ▽74 | ▽11 | ▽11 | ▽4 | ▽1 | ▽6 | - | ▽3 | ▽2 | ▽15 | ▽3 | ▽2 | ▽7 | ▽3 | - | - | ▽6 | - |

○ 반면,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지정 건수는 전체 대비 34.4%(820개) 이나, 2024년 말 기준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39.9%(689개)로 지정 대비 존속률이 더 높게 나타나,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에서 마을기업 정책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음

○ 행정안전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효과가 높은 데이터 기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마을기업법상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해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마을기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금융사회적경제과/경제통상진흥원]

○ 전북자치도 마을기업은 2025년 현재 117개로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 전북자치도 마을기업 현황 >**

(단위: 개소)

| 지역 | 고창 | 군산 | 김제 | 남원 | 무주 | 부안 | 순창 | 완주 | 익산 | 임실 | 장수 | 전주 | 정읍 | 진안 | **합계** |
|---|---|---|---|---|---|---|---|---|---|---|---|---|---|---|---|
| 기업수 | 10 | 6 | 9 | 10 | 7 | 3 | 8 | 13 | 10 | 8 | 7 | 7 | 16 | 3 | **117** |

○ 전북자치도는 국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을 육성을 위해 사업비 2,022백만원(국비 95, 도비 940, 시군비 987)을 투입하여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25년 마을기업 지원 사업 및 예산 현황 >**

| 구 분 | 사업비 (백만원) | 사업량 | 주 요 내 용 |
|---|---|---|---|
| 마을기업 육성(지정) | 190 | 10개소 | 행안부 주관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마을기업 운영비, 사업개발비, 기계 구입, 홍보비 등 지원 |

| 구 분 | 사업비 (백만원) | 사업량 | 주 요 내 용 |
|---|---|---|---|
| 마을기업 고도화 | 400 | 8개소 | 재지정(2회차) 이상 마을기업 대상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HACCP, 인프라 등 지원 |
|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 492 | 1개소 | 마을기업의 자립역량 강화 및 온·오프라인 판로확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 940 | 2개사업 59명 | 마을기업의 경영 및 HACCP 인증 등 행정사무 인력 운영 사무장 교육, 인건비 지원 |

※ 시행주체 : 시군 및 지원기관((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마을기업법 제정에 따라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많은 사업 수행이 가능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전북자치도의 마을기업 지원 근거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4조 및 행전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었음

○ 또한 같은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시행(2026.8.15.) 전에 **조례 제정이 필요**함

※ 타 시·도 마을기업 조례 현황: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2024.7.19.)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2020.1.13.)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3. 시·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4. 시·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시·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도에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6. 전문가 모여 '소방드론' 재난현장 미래전략 구축 [소방청]

◇ 재난 현장에서 드론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첨단기술 활용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드론 협의회' 출범

## 1 추진배경

○ 드론 효과성 입증에 따른 국내외 드론산업이 급속히 진화됨에 따라 소방드론의 현장 활용 수요와 역할도 점진적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드론 기술개발 동향과 재난현장을 연결한 소방드론 활용 전략과 미래 정책방향 제시 등 자문·연구 수행을 위한 드론 전문협의체 구성 필요

- (개발동향) AI 기반, 자율비행 및 정밀 정찰드론 / 유선제어 광섬유 드론 / 자동 회피기능 고도화 등

## 2 주요내용

○ 최근 소방드론의 활용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전국에 배치된 드론은 현재 676대에 이르며, 운용 실적은 2020년 1,231건에서 2024년 4,623건으로 크게 늘어남

○ 이는 연평균 약 40%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재난 현장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운용실적) 연평균 40% 증가<('20년) 1,231건, ('21년) 1,691건, ('22년) 2,637건, ('23년) 3,628건, ('24년.) 4,623건>

○ 그간 드론 도입을 통해 대형 화재 시 열화상 감지, 야간 수색, 산악 조난 구조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재난현장의 드론은 단순한 장비로서 역할을 넘어 정책, 기술,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한 단계 발전이 필요한 시점임

○ 소방드론 협의회는 현장 전문가와 연구원, 교육기관 등 민 · 관 · 학이 참여하는 전문협의체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 기구로 운영 예정이며,

○ 협의회는 8월 중 최초(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재난현장 드론 활용 확대 방안 ▲드론 기반 대응전략 및 정책 기획 ▲조종자 교육 및 기술 훈련 강화 ▲민 · 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다룰 예정임

○ 특히 드론의 데이터 수집력, 접근성, 실시간 대응능력은 기존 인력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소방청은 드론기술과 운용인력의 조화를 이루는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 안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3 구성 및 역할

○ **(방향)** 전국 드론 자격자 중 소방드론 활성화 연구 · 교육, 국내외 드론 이슈 및 국제컨퍼런스 주제 발표 · 토의 등 가능 인력 중심 구성

○ **(구성)** 12명 내외 <내부(소방공무원) 7, 외부(교수, 개발자, 연구원 등) 5>

* 추진과제 실효성 • 집중도 고려, 최소인력 운영 ⇒ 향후 연구분야 세분화 등 필요시, 인력 증원(예정)

○ **(역할)** 재난현장 드론 활용, 정책 · 대응전략 · 기술 · 교육훈련 방안 등 연구/논의

* (인센티브) 연말표창, 소방청드론 전문 강의 인력풀 위촉, 국외훈련 등(순차 확대 예정)

○ **(선발기준)** **(필수)** 소방공무원 7년 이상 재직자로 드론관련 임무수행 경력 3년 이상

* 추천요건 필수요건 충족 + 선택요건 중 1건 이상 충족 ⇒ 추천 인원 제한 없음

**(선택요건) ※ 다수 요건 충족자 우대**

1. (학위) 재난 및 드론관련 전공 학위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항공, 기계, 전자, 재난과학 분야)
2. (강의) 1년 이상 또는 6회 이상 출강, 직무교육 콘텐츠 개발 이력
3. (자격) 드론 운용 관련 자격증 보유(지도 조종자 이상)
4. (기타) 드론관련 대회.공모전.우수사례 발표 입상 또는 연구보고서 • 학술지 • 논문 등 저자(공동저자 포함)

##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소방본부]

○ 전북의 경우, 소방드론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임무 환경과 개별 임무 특성에 적합한 소방드론 관리 · 운용 기준 마련 및 체계 일원화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소방드론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 '24년 말 기준 도내 소방드론 관련 자격자는 340명, 드론은 총 17대를 보유하고 있음

- 자격자 (1종 159명, 2종 18명, 3종 1명, 4종 145명, 지도조종 16명, 실기평가 1명)
- 드론 보유 현황 (본부 2대 및 서별 각 1대 / 2종 2대, 3종 2대, 4종 13대)

○ 드론운영 필수인원은 153명 (17대×3명)이나, '24년 기준 도내 구조대원 드론 자격자는 112명 (4종 제외)으로 41명의 추가 인원 확보가 필요하며, '25년 드론조종자 양성과정 위탁교육을 위한 교육비 1,500만원의 예산은 수립되어 있음

○ 소방드론은 도내 소방서 119구조대에서 현장활동과 동시에 운용중에 있고, 전담 인력 부재로 인해 119구조대원이 현장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화재, 구조, 구급 활동을 중단 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소방드론을 현장활동대원이 병행 운영함에 따라 업무가중과 실 운용경험 부족 등으로 장비조작 및 숙달 미흡에 따른 운영능력 저하의 문제점이 있으며,

| 구분 | 합계 | 화재 | 수 색 | | | |
|---|---|---|---|---|---|---|
| | | | 소계 | 수난사고 | 산악사고 | 기타수색 |
| **합계** | **275** | **74** | **259** | **45** | **60** | **154** |
| '24년 | 78 | 2 | 74 | 8 | 5 | 61 |
| '23년 | 124 | 31 | 93 | 31 | 22 | 40 |
| '22년 | 73 | 7 | 66 | 2 | 13 | 51 |

※ '25년 6월 말 기준 : 46건 (화재 29, 수색 17)

○ 소방드론의 경우 현장 활동을 위한 필수 장비가 아님에 따라 선택적 활용이 이루어지는 바, 드론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임무수행 장려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도내 '25년도 드론관련 예산은 총 2,400만원으로 드론 고장발생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별 소방기동장치 수리유지 비용 및 공공운영비로 대처하고 있으며,

| 총 금액 |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 | 드론조종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 |
|---|---|---|
| 24,000천원 | 9,000천원 | 15,000천원 |

○ 이는 소방드론 파손에 대한 부담감 가중과 현장활동의 소극적 대처로 이어지고 있어, 드론 운영 중 기체 오작동 등의 사유로 기체의 일부 또는 전체 손해시 보장을 담보하는 기체파손보험의 예산 편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체파손보험 : 기체당 평균 2,000천원 / 약 34,000천원 (소방드론 17기)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1. 병원 응급실 '경광등 알림 시스템' 운영 [경상남도]

◇ 경상남도의 '응급실 경광등 알림 시스템'은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 대원과 병원 응급실 간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이 시스템은 경광등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지능형 응급의료 전달체계임

### 1 추진배경 및 목적

○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응급실 경광등 알림 시스템을 도입함

*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119구급대 출동부터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걸린 환자는 ('23년) 11만 3,081명에서 **('24년) 13만 3,683명으로 18.2% 증가**함

○ 경상남도는 2025년 6월부터 **도내 34개 응급의료기관에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023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24시간 응급의료 상황실과 연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2 추진근거

○ 별도의 개별 법률이 아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기존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됨. 이를 통해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 3 주요내용 및 시사점

○ **경광등 알림 시스템**: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정보를 119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면, 이송 대상 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경광등이 자동으로 켜져 의료진에게 즉각적으로 환자 발생을 알림

○ **실시간 수용 여부 확인**: 의료진이 경광등을 통해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경광등이 꺼지면서 구급대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함

○ 기존의 전화 통화 방식에서 벗어나 **시각적 알림과 시스템 연동**을 통해 구급대원과 병원 간의 의사소통을 단축하고, **이송 결정 시간을 대폭 단축**

○ 경상남도의 시스템은 IT기술을 활용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음. 특히, 병원과 소방 당국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경상남도 '응급실 경광등 알림 시스템' 작동 원리**




<출처 :동아일보>

##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관계부서: 소방본부 외]

○ **2022년 전북자치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의료이용률은 63.6%**이며,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10위, 9개 도 중 3위 수준으로 나타남. 하지만, 전북 내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의료 이용률**이 **지역별로 큰 편차**(남원권 24.6% vs 전주권 75.7%, '22년 기준)를 보여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주권(75.7%)이 가장 높고 남원권(24.6%)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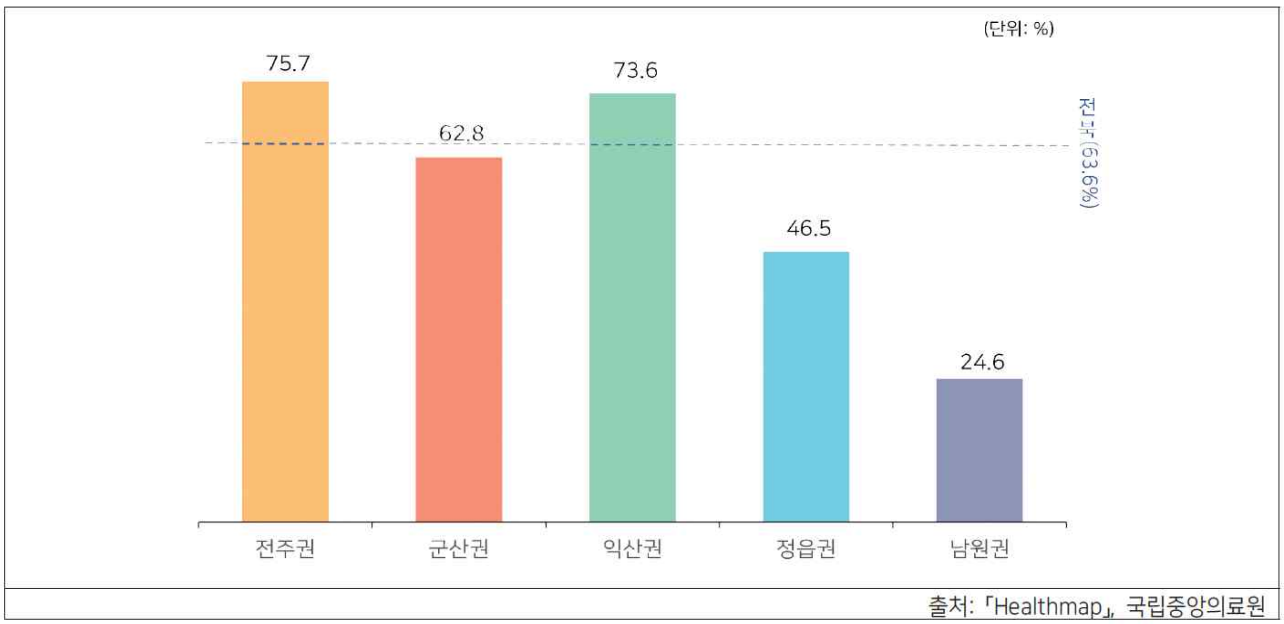



그림 261. 전북 중진료권별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30분) 내 의료이용률(2022년)
<출처: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표 통계집('24.12.)

○ 전주시 완산구(85.4%)와 같은 도시지역은 접근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무주군(2.0%) 등 일부 군 지역은 심각한 응급의료 취약지**인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지역 간 격차는 83.4%p**로, 균등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북 소방본부는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119구급 스마트 이송시스템)'를 운영하며 이송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는 주로 **119 구급대의 내부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병원 도착 이후의 진료 준비 시간 단축이나 지역 간 응급의료 편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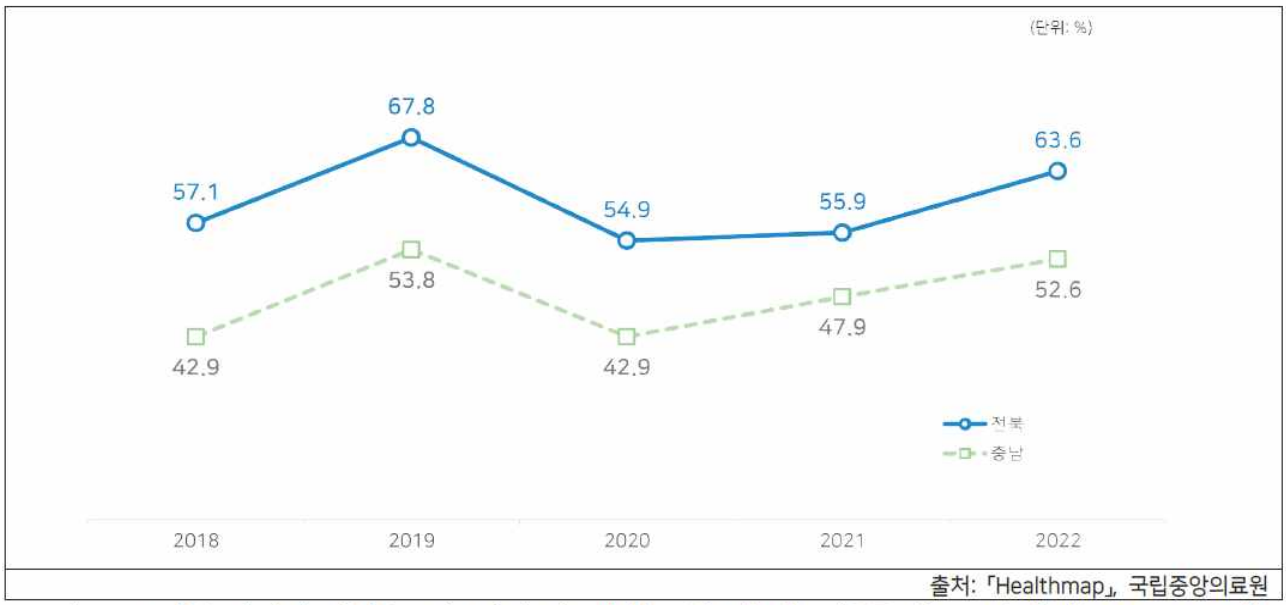
○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골든타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경광등 알림 시스템'처럼 병원응급실과 119 구급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의료진이 환자 도착 전 미리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개선 방안을 참고할 수도 있음

○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무주군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정책과 투자가 시급**함. 지역별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참고 전북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의료이용률 ['18년~'22년]

## 5-⑦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30분) 내 의료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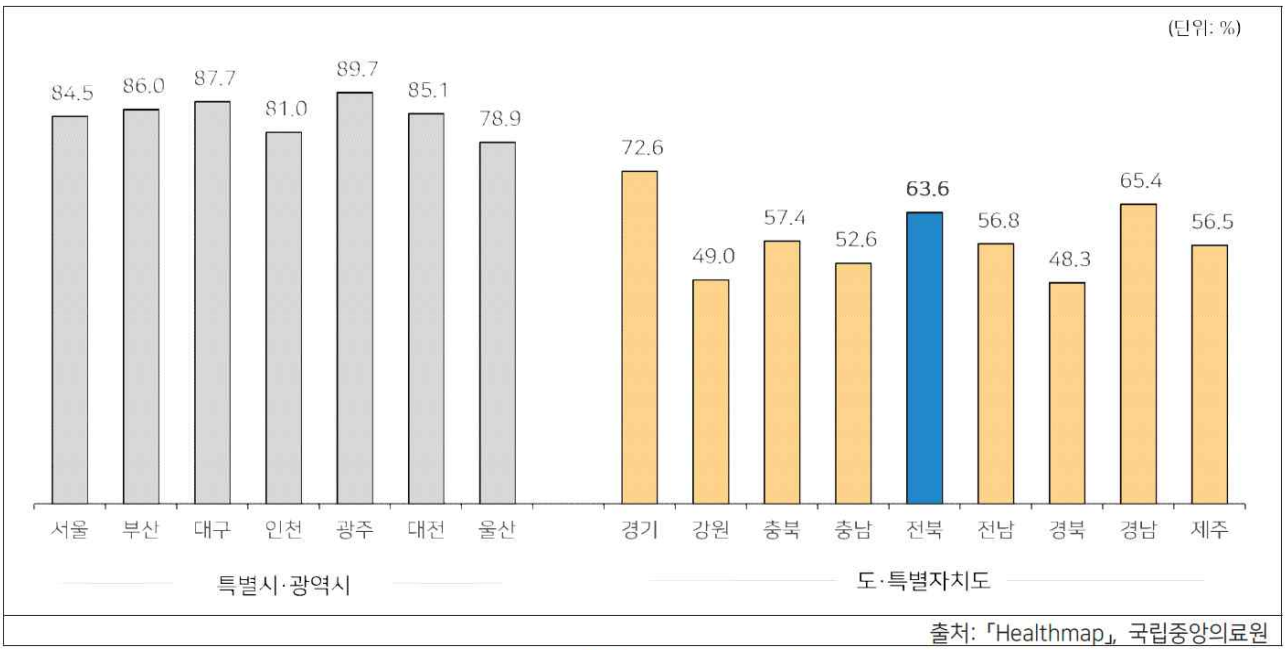
○ 전북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30분) 내 의료이용률은 2018년 대비 2022년 연평균 2.7% 증가함. 202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출처: 「Healthmap」, 국립중앙의료원

그림 259. 전북 및 충남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30분) 내 의료이용률 최근 5년 추이(2018-2022년)

○ 전북은 63.6%로 16개 시도 중 10번째, 9개 도 중 3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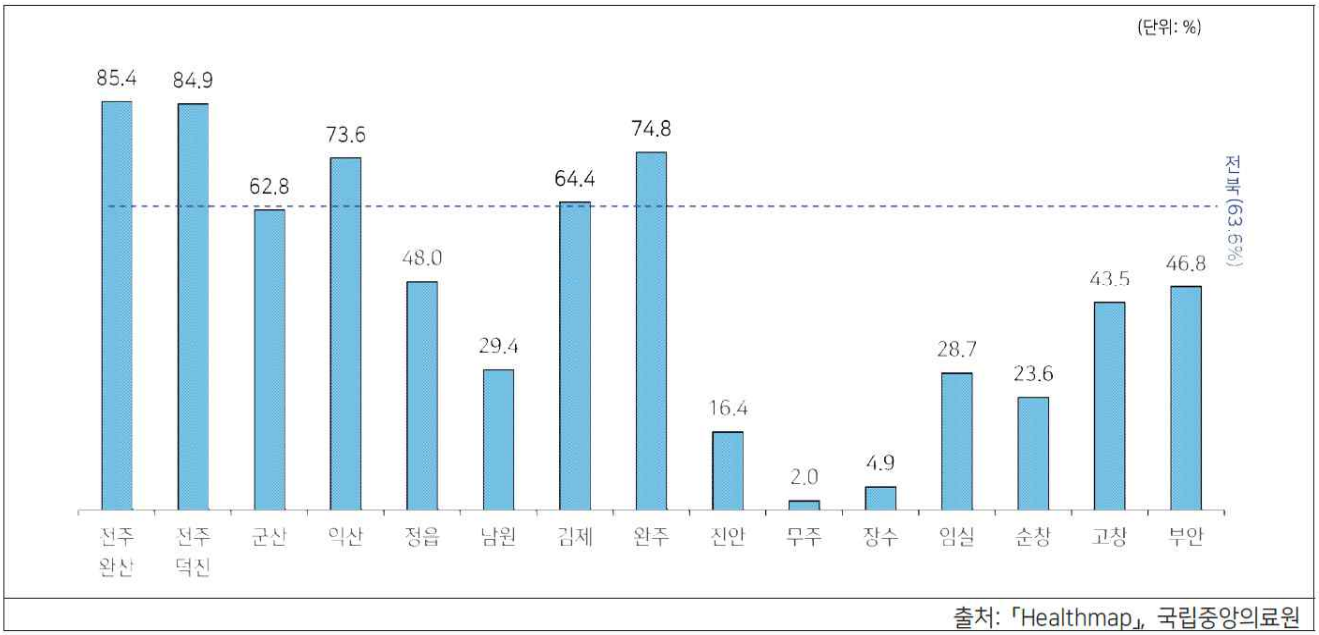

출처: 「Healthmap」, 국립중앙의료원

그림 260. 16개 시도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30분) 내 의료이용률(2022년)

## II.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전주시 완산구(85.4%)가 가장 높고, 무주군(2.0%)이 가장 낮음

○ 지역 간 격차는 83.4%p, 지역 간 격차비는 42.7임




출처: 「Healthmap」, 국립중앙의료원

그림 262. 전북 시군별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30분) 내 의료이용률(2022년)

표 141. 전북 중진료권·시군별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30분) 내 의료이용률: 최근 5년(2018-2022년)

| 구분 | 전북 중진료권·시군별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30분) 내 의료이용률(%) | | | | | 5년 연평균 증감률 |
|---|---|---|---|---|---|---|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전주권 | | 76.5 | 69.2 | 70.1 | 75.7 | ▼0.33% |
| 군산권 | | 75.8 | 47.8 | 46.7 | 62.8 | ▼6.12% |
| 익산권 | | 82.5 | 77.0 | 72.4 | 73.6 | ▼3.70% |
| 정읍권 | | 38.9 | 23.1 | 26.7 | 46.5 | ▲6.14% |
| 남원권 | | 34.0 | 16.7 | 8.4 | 24.6 | ▼10.27% |
| | | | | | | |
| 전주시 완산구 | 83.8 | 84.6 | 82.6 | 82.5 | 85.4 | ▲0.46% |
| 전주시 덕진구 | 86.0 | 86.6 | 85.4 | 83.1 | 84.9 | ▼0.32% |
| 군산시 | 50.5 | 75.8 | 47.8 | 46.7 | 62.8 | ▲5.59% |
| 익산시 | 77.9 | 82.5 | 77.0 | 72.4 | 73.6 | ▼1.39% |
| 정읍시 | 37.3 | 57.4 | 36.7 | 42.3 | 48.0 | ▲6.53% |
| 남원시 | 47.2 | 47.7 | 34.9 | 17.8 | 29.4 | ▼11.12% |
| 김제시 | 50.9 | 58.6 | 29.8 | 28.5 | 64.4 | ▲6.07% |
| 완주군 | 74.2 | 78.3 | 71.2 | 69.0 | 74.8 | ▲0.18% |
| 진안군 | 0.0 | 23.5 | 0.0 | 0.4 | 16.4 | 0.00% |
| 무주군 | 0.0 | 2.3 | 0.0 | 0.0 | 2.0 | 0.00% |
| 장수군 | 3.0 | 3.0 | 1.1 | 1.2 | 4.9 | ▲13.30% |
| 임실군 | 41.8 | 31.2 | 3.3 | 1.2 | 28.7 | ▼8.98% |
| 순창군 | 0.0 | 19.5 | 0.5 | 0.4 | 23.6 | 0.00% |
| 고창군 | 6.7 | 15.2 | 7.1 | 7.6 | 43.5 | ▲59.33% |
| 부안군 | 3.4 | 12.7 | 2.6 | 3.2 | 46.8 | ▲92.82% |

## 2. 다자녀가구 대상 '서울런' 무료 인터넷강의 지원 (서울특별시)

◇ 서울시의 이 시범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및 모든 자녀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1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양육비,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

* 육아정책연구소가 2024년에 발표한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소득 대비 47%까지 증가**함

○ 이에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본 시범 사업을 추진함

### 2 추진근거

○ 본 사업은 특정 조례에 근거하기보다는 **서울특별시의 인구 정책 및 교육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 교육 지원사업인 **'서울런'을 다자녀가구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민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특징이 있음

### 3 주요내용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 **3자녀 이상 가구**의 만 6세~24세 자녀

○ **지원 내용**: '아이스크림 홈런',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등 **15개 유명 온라인 학습 콘텐츠** 중 1개를 **1년간 무상 지원**함. 중·고등학생에게는 연간 20만 원 상당의 교재비도 추가 지원됨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지원 규모: 총 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며,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 250명으로 구성됨

○ **운영 방식:** 농협은행 서울본부 등 민간 후원금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향후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서울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와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2021년 시작된 서울시 교육복지 사업임




<출처 :서울런 홈페이지>

##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관계부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 **전북자치도**는 '서울런'과 같이 유명 사설 온라인 강의를 특정 학생 계층에게 직접 무상 지원하는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대신, **'전북 사이버 도민강좌'**와 같은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통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거나, 성적 우수 학생 외 저소득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으뜸인재' 사업**을 통해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등 다른 목적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함께,「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임. 더불어 급식비나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과 같은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 또한, **확장형·통합형 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기존 교육비 지원을 넘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나 사설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민관협력 기반의 사업 발굴** 등 민간 후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들은 특히,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부산시교육청의 **'BASS' 플랫폼**이나 **강원도, 충청북도(서울런 정책교류 협약)**와 같이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산시교육청의 'BASS' 플랫폼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을 진단, 이에 맞는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AI 학습지원 플랫폼임

** 충청북도('24년 12월), 강원도에서는 평창군('24년 12월)과 태백시('25년 7월)가 서울시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 협약에 따라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은 '서울런'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3. '부산온나 청년패스' 전국 최초 추진 (부산광역시)

◇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부산에 하루 이상 숙박 예정인 다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부산의 주요 관광시설 및 지역업체 할인 혜택 제공

### 1 추진배경

○ '부산 청년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는 청년 상주인구 중심의 기존 인구 정책에서 나아가, 정주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 경제와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정책으로,

○ 청년인구 감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활력 넘치는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다른 지역 청년층의 부산 방문과 체류를 적극 유도하고자 추진한 사업임

### 2 주요내용

○ 기존 주민등록 중심 정주인구 정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산에서 청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추진

- 청년의 여행, 체험,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지역에 머무는 청년의 수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정착까지 유도할 계획이며, 생활인구를 바탕으로 부산을 방문하는 청년들의 체류를 도시 활력의 원동력으로 전환할 방침

○ 부산을 방문한 다른 지역 청년들은 「부산온나청년패스」로 부산의 대표적인 체험시설과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패스 이용자에게는 실질적 할인 혜택 제공 (8.1.부터 신청 후 8.19.부터 할인 적용, 예산 소진시까지)

- 대표 관광지인 키자니아, 더베이101요트, 클럽디오아시스, 아쿠아리움 등에서 최대 60% (2만 8천8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지역 커피전문점 · 베이커리 · 음식점 등에서도 최대 2천 원 정액할인 등의 혜택과 청년 1명이 17개 제휴업체를 모두 이용할 경우, 최대 13만 6천450원의 할인 가능

○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 청년은 오는 8월 1일부터 청년지(G)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명과 숙박일자가 명시된 숙박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 후 사용 가능

- 청년패스를 발급한 청년은 제휴시설 방문 시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현장에서 제휴업체의 승인코드를 입력하면 할인 혜택 적용

○ 한편, 이번 사업 홍보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는 온오프라인 연계 이벤트도 다채롭게 진행 예정(추첨을 통해 제휴업체 상품,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 제공)

- 「부산온나청년패스」 공식 출범 기념 '탄생 기념 빅 이벤트(BIG EVENT)' (8.1. ~ 8.18.까지) 실시
- 이후, 패스 신청과 실제 이용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발급인증 이벤트(EVENT)' (8.19. ~10.31.까지) 실시

##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인구청년정책과]

○ 도내 청년(18 ~ 39세)인구는 '24년 12월 말 기준 385,52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2.2%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청년인구는 연평균 약 3.3%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년 대비 '24년 청년인구 비율은 2.2%p 감소하였음

**[자료1] 인구개요 (2024년)**

| 구 분 | 총 인구 | 청년인구(18~39세) / (단위 : 명,%) | | | | |
|---|---|---|---|---|---|---|
| | | 계 | 연 령 별 | | | |
| | | | 18~24세 | 25세~29세 | 30~34세 | 35~39세 |
| 전 북 | 1,738,690 | 385,523(22.2%) | 119,860(6.9%) | 93,011(5.3%) | 89,545(5.2%) | 83,107(4.8%) |
| 전 국 | 51,217,221 | 13,463,272(26.3%) | 3,530,867(6.9%) | 3,307,842(6.5%) | 3,479,212(6.8%) | 3,145,351(6.1%) |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자료2]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청년인구 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 전체인구 | 청년인구 | 비율 | 비 고 |
|---|---|---|---|---|
| 2020 | 1,804,104 | 440,357 | 24.4% | |
| 2021 | 1,786,855 | 425,371 | 23.8% | |
| 2022 | 1,769,607 | 409,639 | 23.1% | |
| 2023 | 1,754,757 | 396,728 | 22.6% | |
| 2024 | 1,738,690 | 385,523 | 22.2% | |

### [자료3]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인구 전출입 현황

(단위 : 명)

| 연도별 | 연령별 | 전 입 | 전 출 | 순이동 | 비 고 |
|---|---|---|---|---|---|
| 2022 | 전체인구 | 55,511 | 60,626 | △5,115 | |
| | **청년인구** | **26,316** | **35,385** | △9,069 | |
| 2023 | 전체인구 | 53,965 | 58,422 | △4,457 | |
| | **청년인구** | **25,982** | **33,723** | △7,741 | |
| 2024 | 전체인구 | 54,486 | 60,546 | △6,060 | |
| | **청년인구** | **26,844** | **35,322** | △8,478 | |

○ 일자리 및 교육을 이유로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종합 정책 추진으로 생활 안정 및 지역 청년의 기회와 성장을 위한 전북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5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고향올래' 공모사업에서도 익산, 완주, 진안, 무주 등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어 총 3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진안(워케이션 분야), 무주군(런케이션 분야), 완주군(로컬유학 분야), 익산시(로컬벤처 분야) 등 지자체별 맞춤형 인프라 조성과 정주 프로그램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음

○ 이를 통해 지역 체류형 청년 공간 조성 및 주거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인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현재 도내에는 청년 유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관광 중심의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며, 특히 부산의 '청년패스'처럼 청년 대상 관광 지원을 통해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형태의 사업은 부재한 실정임

○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은 주로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외 청년들의 전북 방문과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향후 정주 중심 정책과 더불어 청년들이 전북에 머무르고, 즐기고, 다시 찾고, 정착하고 싶도록 만드는 청년 맞춤형 관광 유입 정책의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청년층의 관심사와 소비 성향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 내 청년 인프라(숙소, 카페, 체험, 로컬 콘텐츠 등)와 연계한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1 '부산온나 청년패스' 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목　　적)** 타 지역 청년 대상 관광시설 할인 제공으로 부산 방문 유도

○ **(사업대상)** 부산 숙박 예정인 타 지역 청년 * 부산 숙박 증빙 필요

○ **(신청일자)** 2025. 8. 1.(금)

○ **(할인시작)** 2025. 8. 19.(화) ~ 예산소진시까지 (인건비 등 포함 약 1.2억원)

○ **(사업내용)** 제휴시설 이용 할인 제공

○ **(할인기업)** 부산시 주요 관광 시설 및 지역업체 17개소

▸ 업종별 현황 : 관광시설 7개소, F&B업종 (카페 · 음식점 등) 10개소

▸ 지역별 현황 : 동부산 8개소, 원도심 6개소, 중부산 3개소

■ **(동부산) 8개소** 키자니아, 스카이라인루지, 엑스더스카이, 더베이101요트, 아쿠아리움, 클럽디오아시스, 슈와게트, 꿀꺽하우스
■ **(원도심) 6개소** 태종대 오션플라잉, 스페이스원지, 그라치에, 또시아, 부산별빛샌드, 모모스
■ **(중부산) 3개소** FM커피, 그라치에, 하이까눌레

### □ 세부내용

○ **(이용절차)** 대상자가 부산청년플랫폼 홈피 신청

**<부산온나청년패스 이용 PROCESS>**

| 청년패스 신청 | ⇨ | 청년패스 발급 | ⇨ | 기업 할인 제공 | ⇨ | 시비 지원 |
|---|---|---|---|---|---|---|
| 대상자 ➡ 市 | | 市 ➡ 대상자 | | 제휴기업 ➡ 대상자 | | 市 |
| 부산청년플랫폼 신청 | | 대상 여부 확인 후 청년패스 발급 | | 제휴 기업 이용 시 청년패스 확인 후 할인 제공 | | 시비 지원분 입금 |

- **(신청)** 대상자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부산온나청년패스」 신청
- **(승인)** 숙박증빙서류 확인 후 담당자 승인처리→청년패스 발급(유효기간 기재)
- **(이용)** 제휴시설 방문시 청년패스 확인 후 이용료 할인

① 이용자가 '단말기에 업체 QR코드* 인식'

② 제휴업체에서 청년패스 코드 입력 등 확인 후 생활인구 이용료 적용

○ (제휴업체 할인율)

| 구분 | 기업명 | 시설 이용가 | 청년패스 할인가 | 할인율<br>(할인금액) |
|---|---|---|---|---|
| 관광시설 | 키자니아<br>(해운대구) | 72,000원<br>(주말 오전<br>성인+어린이 ) | 43,200원 | 40%<br>(28,800원) |
| | 스카이라인루지<br>(기장군) | 33,000원<br>(1인 루지 3회권) | 23,100원 | 30%<br>(9,900원) |
| | 엑스더스카이<br>(해운대구) | 27,000원<br>(1인 대인 입장권) | 17,550원 | 35%<br>(9,450원) |
| | 더베이101<br>요트<br>(해운대구) | 30,000원<br>(1인 대인 주말 주간이용권) | 12,000원 | 60%<br>(18,000원) |
| | 아쿠아리움<br>(해운대구) | 31,000원<br>(1인 대인 주말 이용권) | 17,000원 | 45%<br>(14,000원) |
| | 클럽디오아시스<br>(해운대구) | 54,000원<br>(1인 대인 주말 통합권) | 32,400원 | 40%<br>(21,600원) |
| | 태종대<br>오션플라잉<br>(영도구) | 30,000원<br>(1인 짚라인 이용권) | 16,500원 | 45%<br>(13,500원) |
| 카페 | FM커피<br>(부산진구) | 품목별 상이 | 결제금액-2,000원 | -<br>(2,000원) |
| | 스페이스원지<br>(영도구) | 품목별 상이 | 결제금액-2,000원 | -<br>(2,000원) |
| | 모모스커피<br>(영도구) | 품목별 상이 | 기념품<br>(드립백) | 기념품<br>(드립백) |
| 베이커리 | 슈와게뜨<br>(수영구) | 10,000원<br>(기본슈게트6,<br>크림슈게트6, 하루강정) | 8,000원 | 20%<br>(2,000원) |
| | 부산별빛샌드<br>(동구,초량본점) | 18,500원<br>(종합세트 9개입) | 14,800원 | 20%<br>(3,700원) |
| | 하이까눌레<br>(부산진구) | 품목별 상이<br>(까눌레 4구 이상 구매시) | 결제금액-2,000원 | -<br>(2,000원) |
| 음식점 | 꿀꺽하우스<br>(수영구) | 17,500원<br>(광안밤막걸리 1병) | 14,000원 | 20%<br>(3,500원) |
| | 그라치에<br>(영도구) | 품목별 상이 | 결제금액-2,000원 | -<br>(2,000원) |
| | 그라치에<br>(부산진구) | 품목별 상이 | 결제금액-2,000원 | -<br>(2,000원) |
| | 또시아<br>(영도구) | 품목별 상이 | 결제금액-2,000원 | -<br>(2,000원) |

* (관광시설) 7개소, (카페) 3개소, (베이커리) 3개소, (음식점) 4개소

#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1. 복지미용사, 일자리와 정서돌봄의 새로운 연결 [경북연구원,'25. 7.]

**<< 연구요약 >>**


◇ **경북연구원의 '복지미용사'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미용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임. 본 연구는 미용기술과 돌봄 역량을 갖춘 '복지미용사'를 양성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북형 복지미용사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며, 단기 교육과 공공 인증 체계를 통해 미용 인력을 복지 현장에 투입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기관과 인력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함


### 1. 복지미용사 제도 도입 필요성

○ **고령인구 증가와 복지 돌봄 수요의 구조적 확대**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늘면서 미용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의 복지 전달 체계는 의료·요양 중심이어서 미용과 같은 분야는 대부분 비정기적인 자원봉사나 일회성 행사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복지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됨

○ **풍부한 이미용 인프라와 복지 연계 체계의 미비**

- 현재 **복지 현장**에서 **이미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할 **체계적인 일자리 설계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 경상북도에는 2023년 기준으로 인구 1만 명당 4개소에 해당하는 2,370개의 등록 미용업소가 있어 전국 평균(3.1개소)을 상회하는 풍부한 이미용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를 지역 복지 체계에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채널은 매우 제한적임. 현재 이미용 서비스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 항목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어 지**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임

- 실제로 지역 내 등록 미용업소 중 복지기관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곳은 약 4.3%에 불과함. 또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의 **취업 연계성과 고용 안정성은 낮은 수준**임

○ **복지 향상과 고용 창출의 이중 효과**

- **복지미용사**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위생, 심리, 사회 참여 기능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전문복지 인력**으로, 미용 서비스는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청결 유지, **심리적 안정, 자존감 회복, 사회적 소외 방지** 등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역할을 수행함
- 복지미용사는 기존의 **의료 중심 복지 전달체계**가 포함하지 못했던 **정서돌봄** 수요를 흡수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정서돌봄형 복지일자리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

- 기존 공공 일자리는 단순 보조적 성격이 강해 전문성과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미용 서비스 분야에 부적합할 수 있음. **미용 서비스는 정서적 교감을 통해 고령층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어 **'정서돌봄형' 일자리로 특화**할 수 있음
-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표준화된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함.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경북·대구 미용사 국가자격 취득자 수(2023년 기준)

| 구분 | 일반미용사 | 피부미용사 | 네일미용사 | 이용사 | 합계 |
|---|---|---|---|---|---|
| 경북 | 250명 | 120명 | 71명 | 43명 | 484명 |
| 대구 | 360명 | 190명 | 102명 | 80명 | 732명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 2. 유사정책 및 사례

○ **복지미용사 제도화 경험**

- 일본은 2000년대 초반 후생노동성* 주도로 **'복지미용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제화함. 이들은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외출이 어려운 고령자와 환자를 대상으로 **자택 방문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활동함

* 후생노동성(厚生勞働省)은 일본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합쳐진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국민의 보건, 의료, 복지, 노동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함

- 제도는 **국가공인 미용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과정(32시간)을 운영하고, 수료 시 인증서를 발급함. 교육 후에는 실습을 포함한 현장 교육이 병행되며, 이 덕분에 요양시설 내 미용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짐. **2021년 기준 약 9천 명의 복지미용사가 활동 중**이며, 일본복지미용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인증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일본은 **사회보험, 파견운영, 인증제도를 연계**해 복지미용사 제도를 구축함. 복지미용사는 전문보험 가입과 파견 운영 시스템으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며, **복지미용사협회**가 인증 발급과 활동을 총괄하며, **2020년 기준 약 3,200명**의 **복지미용사**가 활동하고 있음

○ **국내 지자체 방문미용서비스 시범사례 및 성과**

- 서울, 광주 등 주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복지 미용서비스 시범사례**로,

· **서울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약 방문 서비스를 운영 중임

· **광주시**: 광주 남구는 지역 미용사회와 협력해 재가노인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주광역시는 요양기관과 협약해 미용봉사단을 정식 파견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도**: '돌봄+미용 통합서비스' 플랫폼 모델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단기사업 예산으로 임시 운영되고 있음

- **국내 방문 미용 서비스**는 현재 **공모형 단년도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낮음**. 특히 시·군 간 **예산과 인력 공급의 불균형, 서비스 품질의 편차**가 존재함

- 방문 안전 교육, 공공 중개 인프라, 운영 표준 등이 부재하여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 때문에 교육, 인증, 매칭 시스템을 통합한 **지속가능한 구조**로의 설계가 필요함

## 3. 경북형 이미용복지일자리 모델 구상

○ **복지-일자리 융합형 서비스 고도화 방향 설정**

- 고령화와 장애인 증가에 따른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용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구조 설계**가 제안됨. 이를 위해 미용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복지 수요와 운영 체계를 통합하는 공공 매칭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이 플랫폼은 인력을 등록, 관리하고 복지시설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품질 관리와 안전 교육 기능을 포함함

- 단계별 시범사업과 성과기반 지역 확산 전략 구사(안)
  · 1단계(2026년) : 3개 시·군 시범 실시, 60명 고용, 연간 9,000회 서비스 제공
  · 2단계(2028년) : 12개 시·군 확산, 240명 고용, 연간 36,000회 서비스 제공
  · 3단계(2030년) : 23개 시·군 정착, 460명 고용, 연간 70,000회 서비스 제공
  · 4단계: 전국 자치단체 확산 및 중앙정부 정책 반영

○ **복지미용사 양성 및 인증체계 구축**

- 국가 미용자격 소지자 중 복지 현장 진입을 희망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과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 시 공공인증서를 발급하며, **인력풀 등록제**를 통해 인력을 관리해야 함

○ 공공중개 플랫폼 및 서비스 운영 구조

- 통합 플랫폼은 가칭 '**경북복지미용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주요 역할은 지역 복지기관, 노인시설 등과 **미용 인력을 매칭**하는 것임

- 또한, **모바일 매칭 플랫폼**을 개발해 월 단위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서비스 매칭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 평가, 이력 관리, 안전 교육 확인, 민원 대응 등을 포함한 종합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서비스 유형별 지역 맞춤형 운영**

- 방문미용 서비스는 대상과 장소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주형**은 요양시설 내에서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이동형**은 농어촌 주민을 위해 차량을 이용해 순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 연계형**은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임

○ **제도화 기반 마련 및 타 지자체 확산 전략**

- 복지시설과 **정기 방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시·군 복지관, 요양시설 등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짐. 이 체계는 **회당 단가 2만 원, 월 2회 서비스**를 기준으로 예산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자격 등록** 또는 **도지사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임

- 중앙정부 및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제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임.

- 이를 위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법」과「지역일자리 창출법」에 **'복지미용' 및 '정서돌봄형 미용 일자리' 항목 신설**을 **건의**나 문화누리 카드 등과 연계해 바우처 통합 적용 방안도 검토가 가능함

## 4. 정책 도입의 기대효과

### 중장년·청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 및 전문직 진출 촉진

○ 이 정책은 **중장년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복지미용 분야는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진입 경로를 제공하며, 기존 미용 시장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에도 기여함

○ 또한, **복지 특화 서비스**를 통해 청년층이 과밀한 시장을 넘어 **전문직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함

###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및 수요자 만족도 향상

○ 이 정책은 **복지 돌봄 연계형 미용 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문 복지미용사 투입을 통해 정서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완화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우처 제도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이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지역 일자리·복지 정책모델로서의 확장 가능성 확보

○ **100시간 내외의 단기 전문 교육**을 통해 **기존 직업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집중적인 직업 전환이 가능한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함

○ **정량적 효과 추산**

- **연간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수혜자 수**: 1,000명의 복지미용사를 양성하면 연간 총 15만 회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약 13만~15만 명의 수혜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경제적 효과**: 복지미용사 1,000명 양성 시 연간 직접 소득 약 204억 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
- **간접 편익**: 경제적 효과에는 고령자 정서 안정, 사회적 고립 완화, 의료비 절감, 가족 간병 부담 완화 등 다양한 간접 편익이 포함됨

○ **정성적 효과**

- 수혜자 측면 : 자존감 향상, 정서안정, 사회적네트워크 회복, 고립감 해소 등 삶의 질 개선

- 제공자 측면 : 사회 재진출 기회 제공, 자아실현 및자긍심 회복, 지역사회 기여도 증진

- 정책적 측면 : 복지와 고용의 융합형 복지 모델로서 마을 돌봄, 방문 복지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새로운 정책 영역 창출

▼ 경북형 미용복지서비스 사업 기대 성과 예시

| 항목 | 주요 내용 | 성과지표 예시 |
|---|---|---|
| 고용 효과 | 중장년·청년 재진입 유도 | 신규일자리 창출 500명 이상 (5년 기준) |
| 복지 효과 | 돌봄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 만족도 90% 이상, 재이용률 80% 이상 |
| 제도적 효과 | 제도화·예산항목화 가능성 | 관련 법안 발의, 국비사업 반영 여부 등 |

##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소관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외]

○ 전북은 경북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미용과 같은 **비의료적 정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복지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지역의 사례와 같이, 전북자치도 역시 방문 미용 서비스가 공모형 **단년도 사업**이나 **일회성 봉사**에 머물러 있어, 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의견을 참고하여, **복지미용사**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특히, 지역 내 미용 인프라를 활용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직업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복지 일자리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 2. 생성형 AI와 일자리 변화 [국회 『Data+』 ('25. 6)]

## << 연구요약 >>

◇ 2022년 11월 ChatGPT 3.5의 출시로 생성형 AI(Generative AI)와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일자리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생성형 AI의 발전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대체)하는 대신, 연구 및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업무는 보완(증강)하는 차별화된 영향을 나타냄

## □ 생성형 AI의 주요 기능 변화

○ 생성형 AI는 출시 초기, 문장 생성에서 나아가 이미지·영상·음성·3D 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성하고 분석하는 종합적 지능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




자료: McKinsey & Company. (2025.1.). Superagency in the workplace: Empowering people to unlock AI's full potential 등 재구성

## □ 생성형 AI가 노동에 미치는 변화

○ 생성형 AI 등장 이전의 기술혁명은 주로 저학력·저임금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 업무를 대체했으나, 생성형 AI는 화이트칼라의 고도 지식 노동과 창의적 업무까지 자동화하는 등 단순 대체를 넘어 서고 있으며, 자동화(대체) 효과와 증강(보완) 효과라는 이중적 영향을 미침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3.12).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Wilbur Xinyuan Chen 외. (2024.12.). Displacement or Complementarity? The Labor Market Impact of Generative AI,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25-039.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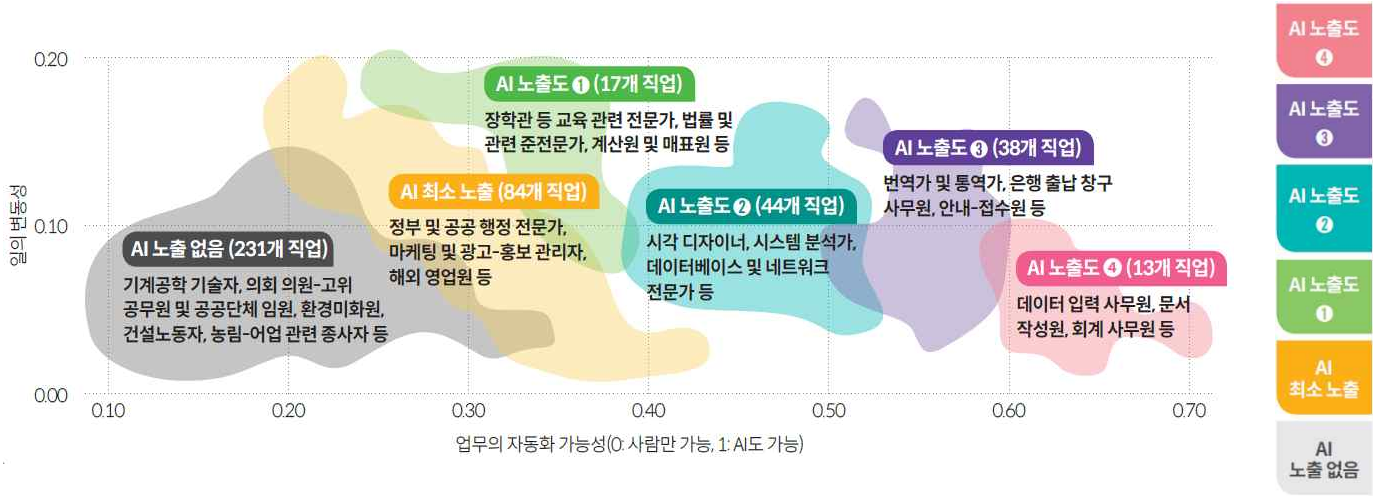
## □ 직종별 영향

○ 국제노동기구(ILO)의 2025년 연구에서는 국제직업분류 427개 직업에 대해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수준을 6가지로 분류하여 자동화 잠재력 및 대체 가능성을 살펴봄

○ 전체 직업 25%가 생성형 AI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사무직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음

○ 생성형 AI의 능력이 확장됨에 따라 미디어, 소프트웨어 및 금융 관련 직종에서도 노출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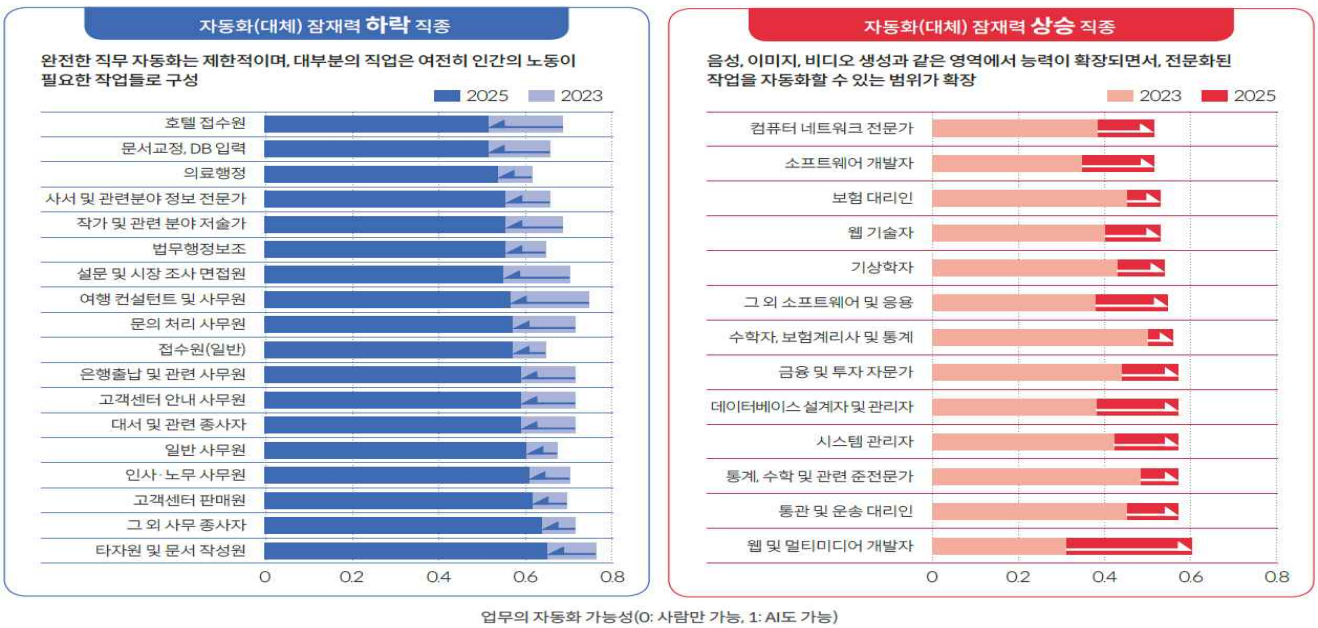
< 국제직업분류 427개 직업의 생성형 AI 노출도 >




※ ILO(국제노동기구)는 각 직업 내 업무의 자동화 가능성과 업무별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I 노출도를 산정함
AI 노출도란 근로자가 직업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거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말함

○ 2023년과 2025년 사이 생성형 AI로 인한 직종별 자동화 및 대체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완전 자동화보다는 '업무 방식의 변화와 재설계'가 더 일반적인 현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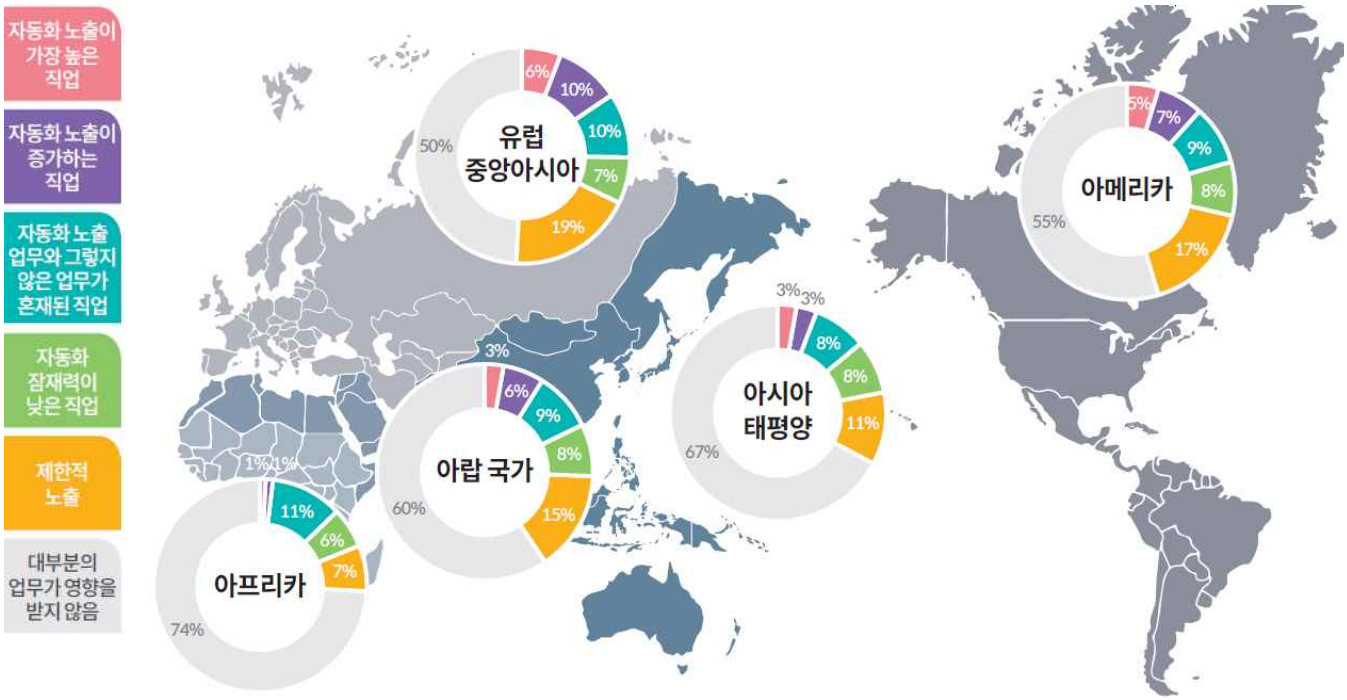
< 직종별 자동화(대체) 잠재력의 변화(2023~2025) >




※ ILO. (2025.5.). Generative AI and Jobs: A Refined Global Index of Occupational Expo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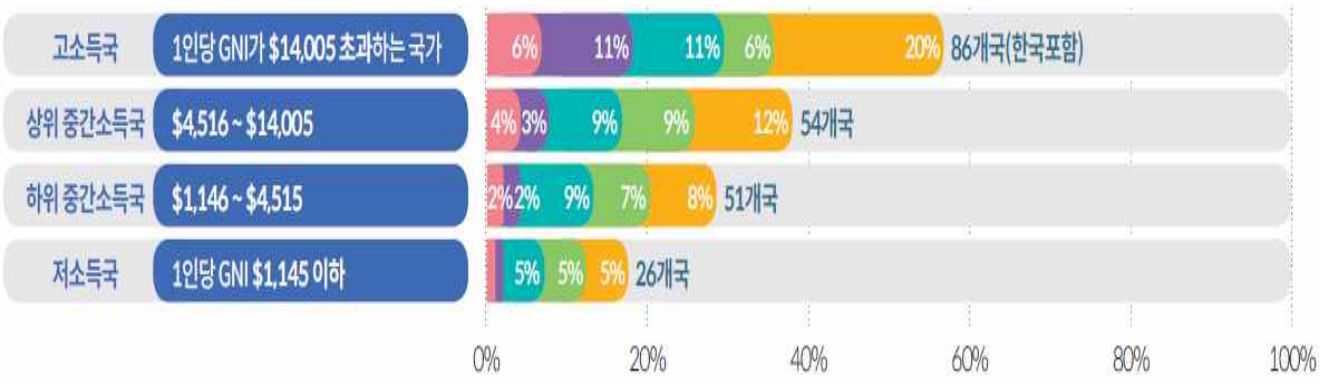
## □ 대륙별 영향

○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이 생성형 AI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 소득수준 국가별 영향

○ 고소득 국가일수록 사무직, 전문직 등 생성형 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직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직업군의 약 34%가 영향을 받지만 저소득 국가는 약 11%로 국가 간 차이가 큼




※ ILO. (2025.5.). Generative AI and Jobs: A Refined Global Index of Occupational Exposure

## □ 성별 영향

○ 생성형 AI에 노출된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여성 9.6% vs 남성 3.5%, 전세계 여성 4.7% vs 남성 2.4%가 고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ILO. (2025.5.). Generative AI and Jobs: A Refined Global Index of Occupational Exposure

## □ 자동화(대체) 잠재력이 상승한 직업군의 일자리 전망(2023~2025)

○ 미국 노동통계국의 2025년 연구에서도 **AI가 직업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AI 자동화의 높은 노출이 있는 컴퓨터, 법률, 비즈니스 및 금융, 건축 및 엔지니어링 등의 직종에서도 완전한 대체보다는 작업자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노동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함

## 일자리 수요 전망

### 컴퓨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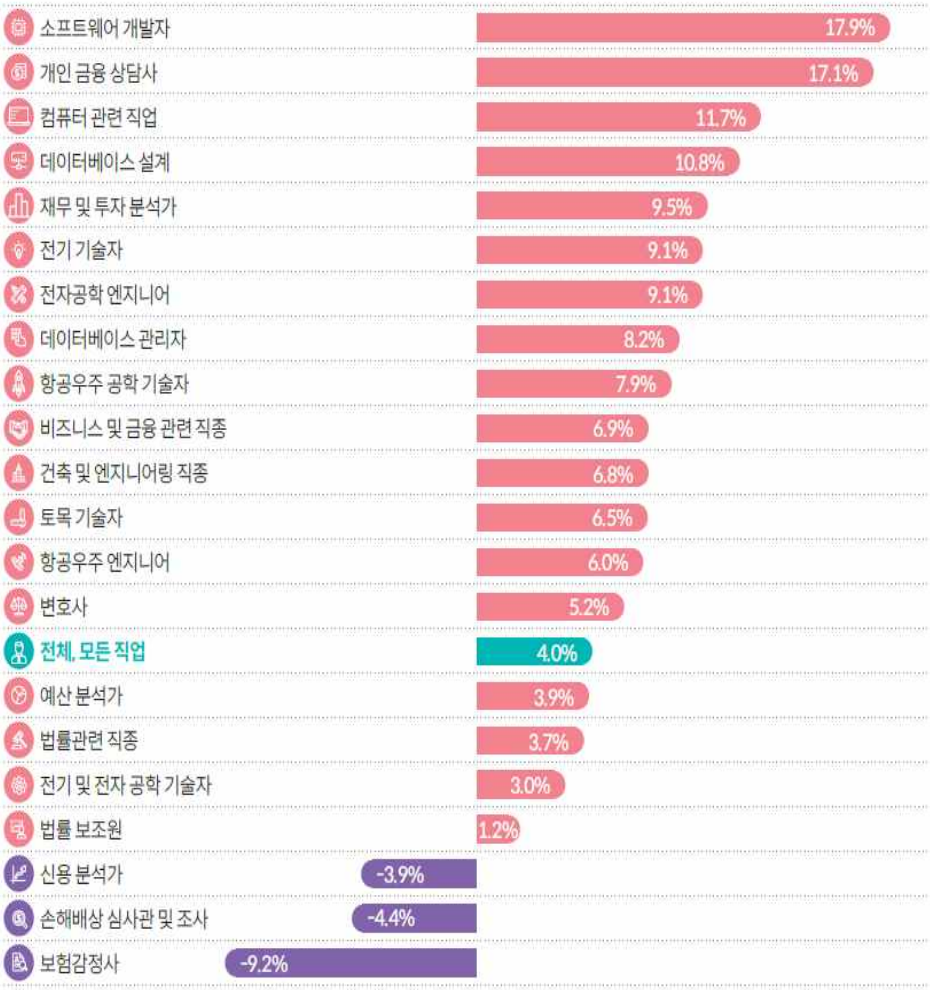
- AI가 프로그래밍 작업을 보완하여 생산성을 향상
- AI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요가 증가

### 금융 서비스

- 복잡한 금융 상담에 대한 인간의 수요는 지속
- 고령 고객층에서 인간 상담사에 대한 선호 지속

### 법률 서비스

- AI의 문서 검토 작업으로 생산성 향상
- 인간이 결과물을 검토하고 상담서비스 제공




※ BLS. (2025.2). Incorporating AI impacts in BLS employment projections: occupational case studies

# 3. 「2025년 10대 유망기술」 발표 [세계경제포럼(WEF)]

## << 연구요약 >>

◇ 세계경제포럼(WEF)은 최근 중국 톈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신장 챔피언 연차총회)에서 '2025년 10대 유망 기술(Top 10 Emerging Technologies of 2025)'을 발표

## □ 주요 내용

○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10대 유망 기술(Emerging Technologies)' 보고서를 통해 향후 3~5년 내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을 발표하고 있음. '2025년 10대 유망기술'은 13번째 시리즈임

○ 올해의 10대 기술은 ▲신뢰와 안전, ▲지속가능한 산업, ▲인간 건강, ▲에너지와 소재의 융합이라는 4가지 흐름이 주축을 이룸. 이들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건강과 지속가능성, 도시의 회복탄력성임

○ 포럼의 10대 기술엔 각국 정부에 관련 기술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없애고 재정 지원을 촉구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음

### 1 구조화 배터리 복합재 (Structural Battery Composites, SBCs)

○ **차량 자체가 곧 배터리가 되는 세상**

○ 전기차를 떠올리면 바닥에 깔린 무거운 배터리 팩이 연상되지만, 구조체 배터리 복합재는 차량의 차체 자체가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기술

○ 다시 말해, 탄소섬유나 에폭시 수지 같은 하중 지지용 소재가 스스로 에너지를 품는 배터리

○ 배터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자동차나 항공기의 차체가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면 이 기술은 복합소재에 전극과 전해질 기능을 부여해 구조체 자체가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무게를 줄이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

## 2 삼투압 발전 시스템 기술 (Osmotic power systems)

○ **바닷물과 민물이 만날 때 생기는 에너지**

○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하구에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 삼투압 발전 시스템, 혹은 염분차 발전으로 불리는 이 기술은 바로 담수와 해수가 만날 때 염도의 차이로 생기는 자연 현상을 이용해 전력을 얻는 친환경 발전 방식

○ 소금기가 있는 물과 없는 물을 반투과막으로 구분해 두면, 농도가 옅은 쪽의 물이 진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압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에너지로 바꿔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

○ '염분차 발전'으로도 불리며,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하구에서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축으로 기대

## 3 차세대 원자력 기술 (Advanced nuclear technologies)

○ **작아진 원자로와 핵융합 에너지 기술**

○ 한때 주춤했던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혁신의 물결

○ 그 중심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비롯한 첨단 원전 기술과,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핵융합 발전

○ SMR은 말 그대로 작은 원자력 발전소로, 대형 원전의 핵심 부품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만든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차세대 원자로

○ 또 다른 축인 핵융합 발전은 태양 에너지원인 수소 원자 핵융합을 이용해 막대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성공만 한다면 인류 에너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줄 "꿈의 기술"

○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ITER 국제실험로를 비롯해 여러 연구시설에서 수십 년째 도전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 진전 소식도 들리고 있음

## 4 GLP-1 계열 신약 기술 (GLP-1s for neurogenerative disease)

○ **몸속에 들어간 생체 의약품 공장**

○ 알약이나 주사로 약을 투여하는 대신, 우리 몸 속에 살아있는 치료제 공장을 심어둔다면 어떨까?

○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인 엔지니어드 리빙 테라퓨틱스(Engineered Living Therapeutics)는 유익한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인체에 주입해 필요한 치료 물질을 몸 안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설계하는 차세대 치료 플랫폼 기술

○ 예를 들어 장내에서 유용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면, 환자의 몸이 알아서 약을 만들어내는 셈

○ 이렇게 되면 병원이나 공장에서 약을 합성해 정기적으로 주사할 필요 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치료 효과를 유지

○ 유전자 조작 미생물을 인체에 주입해 치료물질을 몸속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만드는 기술

## 5 생체공학 치료제 (Engineered living therapeutics)

○ **당뇨 신약에서 찾은 치매 치료의 실마리**

○ 비만·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까지 정복할 열쇠가 될까요?

○ 최근 의학계에서는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A)"로 불리는 당뇨병 신약 계열 약물이 뇌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에 효과를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GLP-1은 원래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크레틴의 일종으로, 이 작용을 모방한 약물이 당뇨와 비만 치료에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음

○ 그런데 이 약물이 염증 반응을 줄이고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능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음

○ 즉, 당뇨약이 뇌세포 보호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의 진행에는 뇌의 염증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축적이 한몫하는데, GLP-1 약물이 이러한 과정을 늦춰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음

## 6 생화학 신호 센서 기술 (Autonomous biochemical sensing)

○ **작고 똑똑한 센서, 24시간 건강과 환경을 지킴**

○ 병원에 가지 않고도, 사람이 일일이 측정하지 않아도 몸이나 주변 환경의 화학 변화를 스스로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면 어떨까?

○ 이제 그런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율 생화학 센싱(Autonomous Biochemical Sensing)' 기술은 체내의 바이오마커나 환경 속 유해물질을 24시간 연속 감시할 수 있는 초소형 센서 기술을 의미

○ 대표적인 사례는 피부에 부착해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CGM)

○ 이 같은 기술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저전력 칩 설계, 고효율 배터리, 무선 통신 기술, 그리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의 접목

○ 별도의 전원이나 유선 연결 없이도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스로 전송·분석하는 것이 가능

○ 자율 생화학 센서는 웨어러블 기기에 쉽게 적용될 수 있어 예방의료는 물론, 환경 모니터링, 스마트 식품 안전 시스템, 산업 현장의 유해물질 감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전망

## 7 녹색 질소 고정 기술 (Green nitrogen fixation)

○ **미래 농업을 책임질 녹색 비료 기술**

○ 전 세계 농업 생산의 절반가량은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 비료를 만드는 데 막대한 화석연료가 소모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음

○ 공기 중 질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기존 '하버-보슈 공정'은 100년 넘게 사용돼 왔지만,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큰 방식이며, 실제로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2%가 여기에 쓰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빛, 미생물 등을 활용해 적은 에너지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친환경 질소 고정(Green Nitrogen Fixation)' 기술이 주목

○ 일부 기술은 실험실 단계를 넘어 파일럿 공장으로 확장 중이며, 상용화를 위한 촉매 개발과 공정 안정화가 진행

## 8 나노자임 기술 (Nanozymes)

○ **인공 효소로 열리는 나노기술의 새 지평**

○ 생명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돕는 효소는 의학과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존재지만, 자연 효소는 열이나 산성에 약하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나노자임(Nanozyme)'으로, 나노자임은 금, 철, 탄소 등으로 만든 나노입자에 자연 효소와 유사한 촉매 기능을 부여한 인공 효소로, 높은 안정성과 낮은 제조 비용이 강점

○ 일부는 기존 효소보다 수천 배 강한 반응성을 보이며, 의료 진단, 수질 정화, 친환경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

○ 다만 안전성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돼야 함

## 9 협력 감지 (Collaborative Sensing)

○ **모두가 연결된 세상, 센서의 집단지능**

○ 도심 곳곳에 흩어진 센서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처럼 작동한다면 어떨까?

○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바로 '협력형 센싱(Collaborative Sensing)'으로, 이는 개별 센서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종합 인식하는 기술로, 도시 안전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교통 신호, 차량 센서, 대기오염 측정기 등이 AI와 연동돼 교통 흐름을 조절하거나, 응급차 통과 시 신호를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도 구축 가능

○ 이러한 기술은 광산, 재난 대응, 환경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은 사물인터넷과 AI 기술의 발전으로 협력형 센싱이 본격적인 확산을 앞두고 있다며, 도시와 산업 운영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주목

## 10 생성형 워터마킹 기술 (Generative AI watermarking)

○ 가짜뉴스 막는 AI 콘텐츠의 지문

○ 딥페이크와 생성형 AI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이미지나 영상이 진짜인지 AI가 만든 것인지 구별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해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생성형 워터마킹(Generative Watermarking)'이며, 이는 AI가 만든 콘텐츠에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지문을 삽입해, 향후 그 출처와 생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 구글 등 주요 기업들도 자사 AI 모델이 만든 이미지에 투명한 코드 삽입을 적용 중

○ 이 기술이 확산되면 가짜뉴스나 딥페이크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온라인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워터마크 훼손, 오탐 가능성, 기술 미도입 콘텐츠의 진위 판별 문제 등은 과제

< WEF에서 선정한 10대 미래유망기술(2020~2024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마이크로니들 | 탈탄소화 관련 기술 | 마이크로니들(패치) | 플렉시블(연성) 배터리 | 과학적 발견을 위한 AI |
| 태양열 기반 화학 | 스스로 비료를 공급하는 작물 | 게노합성기술(유전자 조작기술,mrna기술) | 생성형 인공지능(AI)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
| 가상 환자 | 질병진단 호흡센서 |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들어간 가상장기 | 지속 가능 항공연료(SAF) |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 |
| 공간적 컴퓨팅 | 주문형 의약품 제조 | 센서가 내장된 알약 | 맞춤형 바이러스(디자인 파지) | 고(高)고도 플랫폼 스테이션 |
| 디지털 의료 | 무선신호로부터 에너지 획득 | 디지털 치료앱 | 정신 건강을 위한 메타버스 | 통합 감지 및 통신 |
| 전기항공 |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공학 |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생산기술 | 웨어러블식물 센서 | 건설용 몰입형 기술 |
| 저탄소 시멘트 | 녹색 암모니아 | 저탄소 시멘트 | 공간 오믹스 | 탄성열량 |
| 양자 센서 | 무선 바이오마커 장치 | 전기항공기 | 플렉시블(연성) 신경전자 기술 | 탄소포집 미생물 |
| 그린 수소 | 현지 재료로 제작된 3D 프린트 주택 | 디지털세계와물리적 세계를 이어주는 공간컴퓨팅 | 지속 가능 컴퓨팅 | 대체 가축 사료 |
| 게놈 합성 | 우주 사물인터넷 | 초미세 변화 감지하는 양자센서 | AI 헬스케어 서비스 | 이식 유전체학 |

# 4.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 연구요약 >>

◇ 정부는 적정규모 학교육성에 대한 학교규모 기준 설정, 실질적인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여건 조성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

## 1. 1982~2024 초등학교 폐교 현황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추진

○ 1982~2024년까지 총 3,628개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 폐교는 1992~1999년까지 약 8개년에 집중되었으며, 이 기간에 2,355개교(65%)가 폐교되었다.

○ 정부는 고도경제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이촌향도에 따른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 문제 대응 일환으로 1982년부터 규모가 작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왔다.

- 1982년부터 5~7년 주기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도교육청에 권고
- 2016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이하,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 발표(교육부, 2016.) 이후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에 대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
-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서 '학급 수와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 규모 기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40년 동안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 추진은 쉽지 않았다.

- 학교 통·폐합에 따라 재정절감 측면과 함께 '농산어촌 황폐화' 주장이 결합 되어 교육정책 목표(적정한 학급규모 확보)가 희석
- 학교가 지역사회 주요 기반 시설로 인식되어 학부모를 포함하여 지역주민·동창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폐교를 반대

- 시·도교육청 간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의지·기준에 있어 인식 차이가 있고, 교원 정원 유지를 위해 과소학교 유지 경향

## 2. 우리나라 학교규모 변화 추이 및 과·소규모학교 현황

### 2025~2023 우리나라 학교규모 변화 및 추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학생 수 '60명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소규모 초등학교를 비율로 살펴보면 2023년은 약 25% 정도였으나, 2035년은 약 34% 내·외(±16%)로 증가한다. 다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향후 2035년까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수가 지금보다 약 1.5~2배 증가한다는 결과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 3. 우리나라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의 공과: 소규모학교 정책의 주요 특징

### 1)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교육재정 절감이라는 효과(비용-효과 분석 결과 0.95~7.72)가 있다는 점과 함께, 통·폐합된 이후 통학거리 증가와 함께 누적 폐교 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시·군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약 79~130명 감소 및 학부모 인구도 약 110명이 감소하였다.

### 2)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정책

○ 2010년을 전후하여 주민직선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광역단위(특히, 도 단위)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 수 증가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에 재정만 지원하여 실질적인 학생 수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한 '공동통학구역' 제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0호에서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법령으로 정해진 근린주거구역 내 학교가 아닌 학교를 학생의 선택에 따라 통학수단을 활용하여 소규모학교에 재학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가 공동통학구역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학생 통학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된 장기적인 통학차량이 지원되어야 하고, 시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오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는 '학교낙인효과'도 발생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령인구 감소 시대,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 1) 정책방향1: 국가차원의 학교규모 기분 및 실질적인 통합운영학교 운영 여건 조성

○ **정책과제 1-1: 국가수준 적정 학교규모 설정**

- 우리나라는 학교규모에 대한 법령상 기준이 없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소학교(초등학교)의 표준 학급 수로 '12~18학급'을 표준으로 하면서 지역의 실태 또는 기타 사유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체계적인 학교규모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적정학교 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국가교육 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정책과제 1-2: 학령인구 감소시대 실질적인 '통합운영학교' 기반조성 및 운영**

- 향후,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에서 모두 고려되고 있는 통합운영 학교에 대한 기반조성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통합운영학교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 및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에서 교직원 겸임 및 교육과정 운영, 예산편성 및 행·재정적 지원과 사무관리가 별도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사실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정미경 외, 2020).
-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제 유형의 「의무교육학교(義務教育學校)」를 학교 종류로 인정하고 법제화하였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통합운영학교'를 법제화하고, 학교의 종류로 인정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통합운영학교로 육성·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 2) 정책방향 2: 광역도시계획 및 기초자치단체 도시·군계획과 연계된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Ⅱ)」 필요

○ **정책과제 2-1: 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 결정**

-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지리·사회·교육적 여건이 어떠한지 그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육성·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소규모학교 특성에 대한 법령상 기준이나 유형 분류는 없다. 다만, 권순형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규모학교의 유형을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고립형 소규모학교' 및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 소규모학교 통·폐합, 육성·지원 등 규모가 작은 학교를 선별해 내기 위한 기준은 필요하겠지만, 학생 수 또는 학급 수라는 기준 외에

소규모학교의 지리·사회·교육적 여건에 대한 고려로 소규모학교의 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 **정책과제 2-2: 농어촌 지역 경제·정주 여건 등 「농촌공간재구조화」 측면 고려**

- 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학교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라면 농어촌 지역 경제(산업) 및 정주여건과 연계되어 장기적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방향으로 통합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기존의 농어촌 지역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통합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별로 농촌공간재구조화계획에 포함시키고 '농어촌 지역 재구조화 및 재생'에 적합한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정책과제 2-3: 소규모학교 통합효과 및 외부효과 파악이 가능한 정보 제공**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앞서 통합효과 및 통합에 따른 외부효과 두 가지 모두 파악이 가능하도록 전문연구기관의 데이터 분석 정보가 학부모(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과제 2-4: (가칭)지역사회 연계형 소규모학교 지정·운영**

-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강점이 있는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가칭)지역사회 연계형 소규모학교」로 지정·운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가 가능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직원 인사에 대한 특례 제도 신설을 통하여 지역사회 연계형 소규모학교가 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정책과제 2-5 : '지역통합형 학생통학체계' 마련**

- 향후 더 많은 소규모학교가 통합되거나 소규모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확대되는 경우 학생통학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소규모학교 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 차원에서 「지역통합형 학생통학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지리·사회적 여건

및 학교여건·규모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통학버스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안정적인 학생통학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5. 지역사회 정책과 연계된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Ⅱ)」을 기대하며

○ 우리나라 학교규모는 '지역 간',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규모는 학교교육의 내재적 요인 및 학교 밖의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출생률, 인구의 사회적 이동 등)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학교규모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지역사회 정보와 연계된 '지역형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 수립과 집행만이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행정과]**

◯ 낮은 합계 출산율 따라 전북 도내 학생 수도 급감하고 있어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작은학교 살리기"로 정하고 작은학교 통합을 적극 추진하였다.

◯ 학교 통·폐합 기준을 살펴보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 기준('15.12.)은 도시·읍 지역을 제외한 기타(면·도서·벽지) 지역은 초·중등 60명 이하이며, 우리 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기준은 전교생 9명 이하는 필수, 1면 2개교 이상 초등학교 중 전교생 20명 이하는 권장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학부모 투표 참여자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

◯ 전북의 최근 10년간 학교 통폐합 현황*은 초등학교 21교, 중학교 4교 통·폐합되었으며 제19대 교육감 취임 이후 작은학교 살리기로 학교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총 20개 학교가 통폐합되었다.

* ('16.~'22.) 5교 → ('23.) 2교 → ('24.) 10교 → ('25.) 10교

○ 도교육청은 매년 수립한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라서 향후 3년간 평균 학생 수 9명 이하 학교 명단을 12월 중에 누리집에 게시하여 통폐합 대상 학교를 사전예고하고 있는데 2025년 이후 전교생 9명 이하로 예상되는 학교 수는 초등학교 21교, 중학교 16교, 고등학교 1교로 총 38교가 해당된다.

○ 2025년 교육행정자료 기준(4.1.), 전북 도내 초·중·고 학교 수는 총 750교이며 3년 후에 통폐합이 예상되는 학교는 5.0%(38교)에 해당된다. 향후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문닫는 학교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고등학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작은 학교 통·폐합은 시너지 효과로 전문 교과 운영,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제고,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활동으로 학생의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 및  사회성 발달,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 등 장점도 있으나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의 폐교로 지역 공동화 및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문제점도 있어 어울림학교 운영, 농촌유학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농산촌 지역 학교 복합시설 확충으로 인구 유출을 예방하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 5.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국회입법조사처)

## << 연구요약 >>

◇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어 학교에 SPO 배치를 확대하고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

## 1. 학교폭력등에 대한 경찰 연계 필요성

○ 올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SPO 배치를 확대하고, SPO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사건 당시 대전 학부모·교육단체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지역 교직원 단체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근본적인 학교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상담 등을 수행하는 SPO가 1인당 평균 10개교 이상을 맡고 있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교육부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여 SPO를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SPO 제도 및 역할과 관련한 개선은 없는 상황이며, 지난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생·교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경찰청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 교내범죄에 대한 경찰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행 SPO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요구, 사건 직후 발의된 SPO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고, 교내 범죄 예방 및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SPO 제도 개선과 학교 안전 강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SPO 제도 현황 및 개선 요구

### (1)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 SPO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2012년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17년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SPO)을 둘 수 있도록 규정(제20조의6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SPO는 경찰청장이 배치한다.

### (2) SPO 역할 및 배치 현황

○ SPO의 역할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31조의2는 SPO의 선발 요건, 업무 및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간의 상호 협력 의무를 담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①학교폭력 예방활동, ②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③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등 SPO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경찰청은 SPO 인력을 현재 1,127명(정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1,133명(현원)의 SPO가 배치되어 SPO 1명당 약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SPO 정원 현황

(단위: 명)

| '12 | '13 | '14 | '15 | '20 | '21 | '22 | '23 | '24 |
|---|---|---|---|---|---|---|---|---|
| 193 | 606 | 1,078 | 1,138 | 1,130 | 1,122 | 1,023 | 1,022 | 1,127 |

※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2024.4.25.)

○ SPO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으로 배치되어 기존의 '소년경찰' 업무는 물론 학교폭력 예방교육·홍보, 117 신고사건 처리, 가·피해학생 면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등 학교폭력 예방과 가-피해학생을 선도·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 개선 요구

○ 첫째, SPO의 역할 및 배치 확대에 관한 요구이다. 최근에는 SPO를 학교에 1명씩 배치하여 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예방과 학생 안전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학교·가정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신종유형(마약·도박 등) 소년범죄 등 청소년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SPO 역할 확대 요구로 그 업무 범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 둘째, SPO에 대한 인식 제고에 대한 요구이다. SPO 인지도에 관한 연구(2022) 결과 동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한다'는 응답이 청소년과 학부모의 경우 각각 53.5%, 69.7%로 나타났다. 이는 SPO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역할수행이 요구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 SPO 관련 법률안 검토

### (1) SPO 확충 및 의무 배치

○ 2025년 2월 발의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 김소희 의원안(의안번호 제2208136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하려는 내용이고, 강경숙 의원안(의안번호 제2208139호)은 모든 학교(초·중·고)에 SPO를 의무 배치하되 세부 배치에 대해서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과 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SPO가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우선 SPO 의무 배치를 위한 경찰관 규모를 추산해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학교 수는 총 12,186개교이고, 초등학교 수는 6,183개교이다. 모든 학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현재 SPO 정원(1,127명)보다 11,000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 초등학교에만 배치한다고 해도 5,000여 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규모의 경찰공무원을 단기 간에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경찰인력을 조정하여 학교에 배치할 경우에도 다른 현장에서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 다음으로 SPO가 학교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첫째, 학교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 주체 문제로, 경찰서에 소속된 SPO가 교내에 배치되어 범죄예방 및 안전활동을 담당할 경우, SPO에 대한 경찰서장의 지휘·감독권과 학교장의 권한·책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둘째,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력이 행사된다면 해당 학생은 '범법학생'이라는 낙인이 형성되는 등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경찰관은 교내에서 학교폭력 등 범죄혐의 인지 시 수사개시 의무에 따라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교육적 지도·해결이 무색해지고 학교폭력 사법절차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2) SPO 권한·역할 및 정보공유 강화

○ 동 법 법률안중 최수진 의원안(발의일: '25.2.19., 의안번호 제2208283호)은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처분 사유를 SPO에게 알리도록 하고, 학교장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SPO에 알리도록 하며, SPO는 수집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장, 학교장, SPO가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SPO의 효과적인 업무 지원을 통한 학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방향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24.2.)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SPO를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4. SPO 제도 개선 및 학교안전 강화 방안

### (1) 교내 '학생보호인력'의 확충 및 SPO와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

○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시설장은 그 기관·시설 경비를 위해 경찰배치가 가능하므로(제2조), 학교장은 학교 경비를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의5)에 따라 '배움터지킴이'와 같은 학생보호인력도 배치할 수 있다. 청원경찰과 학생보호인력의 교내 배치가 가능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내 범죄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이를 신규·확대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SPO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로 각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에 SPO를 강사로 위촉하는 등 학교와 연계를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SPO 순찰 및 전문성 강화

○ 한정된 경찰력으로는 모든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할 수 없겠으나, 적정 규모의 SPO를 확충함은 물론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안전보호인력을 통한 학교 주변 안전 취약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편, SPO는「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SPO는 일반 경과(警科)로서 순환보직 대상이므로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학교안전 책무 및 지원 강화

○ 현행법 상 학교 내 안전은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학교장 책임하에 비상벨·CCTV 설치,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학교 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 1. 국가어항 사업의 연내 집행완료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2025.6.) –

### (1) 현 황

○ 국가어항 사업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을 개발·정비하여 어선의 안전한 정박 및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3,377억 8,600만원이나 국가어항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70억 6,400만원이 증액된 3,64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가어항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예산 | 2025 | | | 증 감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B-A) | (B-A)/A |
| 국가어항 | 306,328 | 337,786 | 337,786 | 364,850 | 27,064 | 8.0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국가어항 사업의 편성내역을 보면 기존 계속지구 및 신규지구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국가어항 22개 지구에 총 27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다. 기본사업의 경우 6개소에 86억 5,200만원, 정비사업은 10개소에 84억 300만원, 재해대비사업은 6개소에 10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국가어항 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세부 산출내역 | 제2회 추경안 |
|---|---|---|
| 기본사업 | 계속지구 6개소×1,442백만원(공사비)×국비 100% = 8,652백만원 | 8,652 |
| 정비사업 | 계속지구 10개소×840.3백만원(공사비)×국비 100% = 8,403백만원 | 8,403 |
| 재해대비 사업 | 계속지구 5개소 및 신규지구1개소 ×1,668.17백만원(공사비)×국비 100% = 10,009백만원 | 10,009 |
| 합 계 | | 27,064 |

자료: 해양수산부

(2) 분석의견

○ **이번 추경 예산안이 편성된 국가어항의 상당수 지구에서 집행률이 부진하고, 사업자 선정 기간, 기상악화 시 공사중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총 22개 국가어항 지구 개발 예산을 편성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의 조기 개발 및 재해 취약 시설 정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동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

○ 그런데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계속사업 중 일부 지구의 경우 2025년 5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연내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지를 보면 기본사업에서는 오천항(46.0%), 소래포구항(45.3%) 등 2개 지구가 있고, 정비사업에서는 장고항(18.8%), 녹동항(10.3%), 원전항(0%), 장호항(29.1%), 임원항(47.5%), 청산도항(10.3%), 대변항(49.1%), 낭도항(22.2%) 등 8개 지구가 있으며, 재해대비사업에서도 임원항(37.7%)이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오천항, 소래포구항, 장고항, 장호항 등에서는 올해 상반기 지구별 설계변경 후 집행부진을 만회하려 하였으나 시공사의 선금 보증금 한도 추가 곤란 등의 사유로 집행이 되지 않았고, 녹동항에서는 조달청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계약지연, 원전항은 방파제 선형 변경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처리 기간 소요로 발주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국가어항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024년 결산 | 2025년 | | | |
|---|---|---|---|---|---|---|---|---|
| | | | | | 1회추경 (A) | 집행액 (B) | 집행률 (B/A) | 2회 추경안 |
| 기본 사업 (6개) | 오천항 | 2019~2028 | 43,797 | 747 | 8,917 | 4,100 | 46.0 | 3,500 |
| | 천성항 | 2021~2026 | 29,459 | 4,958 | 10,285 | 5,900 | 57.4 | 633 |
| | 소래포구항 | 2020~2026 | 89,656 | 12,663 | 24,364 | 11,046 | 45.3 | 1,644 |
| | 무창포항 | 2018~2026 | 42,623 | 6,855 | 8,680 | 4,800 | 55.3 | 683 |
| | 진두항 | 2023~2027 | 48,217 | 1,041 | 11,021 | 5,900 | 53.5 | 990 |
| | 송도항 | 2020~2029 | 47,863 | 747 | 4,649 | 3,491 | 75.1 | 1,202 |
| 정비 사업 (10개) | 장고항 | 2025~2026 | 5,252 | - | 1,000 | 188 | 18.8 | 3,700 |
| | 녹동항 | 2022~2026 | 12,643 | 2,103 | 4,861 | 500 | 10.3 | 260 |
| | 원전항 | 2015~2026 | 40,691 | 2,853 | 6,904 | - | - | 435 |
| | 장호항 | 2018~2026 | 29,615 | 5,240 | 9,619 | 2,800 | 29.1 | 543 |
| | 임원항 | 2019~2026 | 16,329 | 3,904 | 3,996 | 1,900 | 47.5 | 210 |
| | 청산도항 | 2016~2026 | 72,123 | 10,104 | 10,691 | 1,100 | 10.3 | 744 |
| | 대변항 | 2014~2027 | 40,535 | 4,238 | 9,337 | 4,585 | 49.1 | 639 |
| | 낭도항 | 2018~2027 | 27,207 | 4,455 | 6,413 | 1,422 | 22.2 | 243 |
| | 회진항 | 2021~2028 | 29,906 | - | 4,884 | 2,600 | 53.2 | 704 |
| | 수품항 | 2016~2028 | 49,691 | 8,997 | 6,040 | 4,000 | 66.2 | 925 |
| 재해 대비 (6개) | 대변항 | 2020~2026 | 49,549 | 10,688 | 8,057 | 4,110 | 51.0 | 2,300 |
| | 호미곶항 | 2017~2026 | 48,697 | 9,123 | 9,145 | 6,883 | 75.3 | 3,000 |
| | 궁평항 | 2025~2026 | 13,000 | - | - | - | - | 3,000 |
| | 임원항 | 2022~2026 | 31,338 | 6,740 | 7,962 | 3,000 | 37.7 | 786 |
| | 위도항 | 2018~2026 | 43,074 | 11,794 | 11,525 | 6,600 | 57.3 | 699 |
| | 현포항 | 2022~2026 | 27,393 | 7,288 | 6,442 | 4,389 | 68.1 | 224 |

주: 2025년 5월말 기준임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이 다소 부진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으나, 더 많은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본예산과 제2회 추경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 그러나 계속사업 지구의 경우 추경예산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야하고, 신규사업지(궁평항)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 입찰 과정을 거친 후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어항 개발 사업의 특성상 하반기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시 공사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가능한 기간은 더 줄어들게 되어 연내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측면이 있다.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 사업지구별 사업진척 상황과 예산 집행실적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2025.4.) -**

## 가. 현 황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소방대 도착 전 민가 등 시설물을 보호하고 산림화재 확산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산불 위험성 및 그로 인한 민가 피해의 증가를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1억 6,3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예산 | 2025 | | 증 감 | |
|---|---|---|---|---|---|
| | | 본예산(A) | 제1회 추경안(B) | (B-A) | (B-A)/A |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 920 | 1,017 | 6,180 | 5,163 | 507.7 |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 - | - | 5,163 | 5,163 | 순증 |

자료: 소방청

○ 현재 전국에 2,807개소의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1]가 설치되었으며, 설치 대수는 강원도 (1,852개소), 경상북도 (434개소), 충청북도 (115개소) 순이다. 이와 같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민간 기부 등에 의해서 설치되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2024.12.31.)]

(단위: 개소)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
| 25 | 10 | 1 | 15 | 63 | 11 | 43 | 97 | 1,852 |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창원 | 합계 |
| 115 | 17 | 41 | 50 | 434 | 23 | 2 | 8 | 2,807 |

자료: 소방청

1)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대상 지역은 해당 지역의 특성, 기상 상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 마을의 위치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경우 산림인접마을로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에, 산림으로부터의 거리가 100m를 초과한 마을이라도 강풍 발생지역 등 위험지역에 해당한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외에도 남서풍(3~5월, 10~12월)이 산림화재 발생 및 확산에 큰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하여 봄·가을 바람 방향을 고려하고, 화목보일러 설치주택 현황, 마을 구성원 현황 등도 검토한다. (자료: 「2025년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기본계획」)

## 나. 분석의견

○ 첫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수요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였으므로, 재난예방 차원에서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재원 투입을 통해 산림인접마을의 산불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소방청은 2025년 3월 발생한 전국적 산불 피해를 고려[2]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 1,199개소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비상소화장치 설치 유형은 2가지로 구분되며, 유형 1(348개소)은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를 같이 신규 설치하는 것이고 유형 2(851개소)는 기존 소화전을 활용하여 비상소화장치만 신규 설치하는 것이다.[3]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

(합 계) 51억 6,300만원
- 유형 1: (소화전 + 비상소화장치) 348개소 × 1,500만원 × 50% = 26억 1,000만원
- 유형 2: (비상소화장치) 851개소 × 600만원 × 50% = 25억 5,300만원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실제 현황]

| 유형1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소화전 미설치된 지역) | 유형2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기설치된 지역) | 함 내부 사진 |
|---|---|---|
|  |  |  |
| 소화전 설치 → 설치 위치 바닥 공사 → 함 설치 | 설치 위치 바닥공사 → 함 설치 | (구성품) 드럼세트, 소방 호스, 관창 등 |

자료: 소방청

2) 소방청은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당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민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가 산불 피해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3) 소방청에 따르면, 비상소화장치는 상수도관로(60mm 이상)가 있는 지역에서만 설치가능하며, 지하에 상수도관은 있으나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소화전도 함께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2025년 추경안을 통해서 가장 많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지역은 경상북도(654개소)이며, 그 다음은 경기도 남부(90개소), 전라남도(80개소), 강원도(63개소) 순이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계획(2025년 추경안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 | 합 계 | 유형1 (소화전+비상소화함) | 유형2 (비상소화함) |
|---|---|---|---|---|
| 대구 | | 60 | 20 | 40 |
| 대전 | | 24 | 19 | 5 |
| 울산 | | 50 | 18 | 32 |
| 세종 | | 19 | 7 | 12 |
| 경기 | 남부 | 90 | 50 | 40 |
| | 북부 | 40 | 23 | 17 |
| 강원 | | 63 | 35 | 28 |
| 충남 | | 29 | 0 | 29 |
| 전북 | | 50 | 25 | 25 |
| 전남 | | 80 | 15 | 65 |
| 경북 | | 654 | 118 | 536 |
| 경남 | | 40 | 18 | 22 |
| 합 계 | | 1,199 | 348 | 851 |

자료: 소방청

○ 다만,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수요조사(2022.3.)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목표 대비 설치 수량이 부족하였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2024년 및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2022년 3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422개소의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목표 대비 703개소가 부족한 1,719개소(국고지원 1,359개소, 그 외 360개소)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었다.

○ 부족분 703개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북이 492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구 63개소, 전북 45개소 순이다. 한편, 강원은 목표 수량만큼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시 산불 피해가 컸던 강원을 중심으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계획 및 완료 실적(2024.10.31.)]

(단위: 개소)

| 시·도 | 설치 계획 | 설치 완료 | 시·도 | 설치 계획 | 설치 완료 |
|---|---|---|---|---|---|
| 서울 | 6 | 6 | 강원 | 1,068 | 1,068 |
| 부산 | 11 | 6 | 충북 | 44 | 38 |
| 대구 | 63 | 0 | 충남 | 49 | 22 |
| 인천 | 34 | 15 | 전북 | 87 | 42 |
| 광주 | 13 | 9 | 전남 | 59 | 44 |
| 대전 | 18 | 1 | 경북 | 877 | 385 |
| 울산 | 6 | 6 | 경남 | 13 | 13 |
| 세종 | 0 | 0 | 제주 | 13 | 3 |
| 경기 | 21 | 21 | 창원 | 10 | 10 |
| 경기북부 | 30 | 30 | 합계 | 2,422 | 1,719 |

자료: 소방청, 「2025년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기본계획」

○ 정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3년 본예산을 통해 1,359개소의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이를 통해서 목표 수량 2,422개소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 특히, 2023년 정부안에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상소화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54억 2,300만원이 신규 반영8)되었음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난예방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산림인접마을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수요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각 연도별로 목표수량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을 반영하였다면 비상소화장치 부족분을 2025년 추경안 편성 이전에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0~2025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안)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
|---|---|---|---|---|---|
| | 2차 추경 | 본예산 | | 본예산 | 1차 추경안 |
| 예산 | 2,000 | 5,423<br>(국회증액 5,423) | 미편성 | 미편성 | 5,163 |
| 계획 대수 | 627 | 1,044 | - | - | 1,199 |
| 설치 대수 | 515[1)] | 844[1)] | - | - | - |

주: 1) 「2025년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장 터파기 결과 입지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설치 수량이 변동되었음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는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방적 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사전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대형 산불 발생 이전부터 산불취약지역을 선정하고 비상소화장치 설치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소방청은 제반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0년 기준, 3~5월에 전체 산불의 56%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산불의 9%, 가을에는 8%, 겨울에는 27%가 발생[4)]하는 계절적 특징을 보인다.

4) 산림청, '산불제대로알기',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http://forestfire.nifos.go.kr)

○ 특히, 경북, 경남 등 일부 지역은 당초 보유 수량 이상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비상소화장치를 점검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기존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 적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사용법을 교육하고 위치를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예상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 설치 현황 (2024.12.31.) | 추가 설치 (2025년 추경안) | 예상 설치 현황 |
|---|---|---|---|
| 서울특별시 | 25 | - | 25 |
| 부산광역시 | 10 | - | 10 |
| 대구광역시 | 1 | 60 | 61 |
| 인천광역시 | 15 | - | 15 |
| 광주광역시 | 63 | - | 63 |
| 대전광역시 | 11 | 24 | 35 |
| 울산광역시 | 43 | 50 | 93 |
| 경기도 | 97 | 130 | 227 |
| 강원특별자치도 | 1,852 | 63 | 1,915 |
| 충청북도 | 115 | - | 115 |
| 충청남도 | 17 | 29 | 46 |
| 전북특별자치도 | 41 | 50 | 91 |
| 전라남도 | 50 | 80 | 130 |
| 경상북도 | 434 | 654 | 1,088 |
| 경상남도 | 23 | 40 | 63 |
| 제주특별자치도 | 2 | - | 2 |
| 세종특별자치시 | - | 19 | 19 |
| 창원특례시 | 8 | - | 8 |
| 합 계 | 2,807 | 1,199 | 4,006 |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현재 소방청은 매년「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를 관리하고 있으며,「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월 1회 이상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비상소화장치 사용에 대한 주민교육도 병행한다고 설명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5년 추경안을 통해 설치될 1,199개소의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의 비상소화장치 활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2025.6.) –

### 가. 현 황

○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인증 등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 2025년도 본예산은 660억원이나 AI분야의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68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예산 | 2025 | | | 증 감 | |
|---|---|---|---|---|---|---|
| | | 본예산 | 제1회 추경(A) | 제2회 추경안(B) | (B-A) | (B-A)/A |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 443,765 | 182,700 | 182,700 | 184,950 | 2,250 | 1.2 |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 63,000 | 66,000 | 66,000 | 68,250 | 2,250 | 3.4 |

자료: 교육부

○ 정부는 정부 주도, 대학 중심, 학과(전공) 기반 등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신기술·첨단분야 인력수요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인식 하에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였고,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부터 동 내역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주요 첨단산업 분야별로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교육부는 2023년 반도체 분야 총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부트캠프 사업을 신규 추진한 후, 2024년에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분야까지 확대하여 총 42개 대학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서는 계속 사업 42개 대학에 더해 미래차 분야에 2개 대학을 신규 지원하기 위한 예산 총 66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참고로, 교육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AI 분야 선정 대학 3개교에서 향후 5년간 총 1,350명 이상의 AI 실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 구분 | | 2025년 본예산 |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
|---|---|---|---|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 계속 | - 42개교 × 15억원 = 630억원 | - 42개교 × 15억원 = 630억원 |
| | 신규 | - 2개교(미래차) × 15억원 = 30억원 | - 2개교(미래차) × 15억원 = 30억원<br>- 3개교(AI 분야) × 15억원 × 50% = 22.5억원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추진절차 및 절차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추경예산안을 통해 신규 지원하는 AI 분야의 실제 집중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현장성 높은 교육 및 원활한 취업 연계를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기업의 참여를 필수화하면서 동시에 기업 수요 및 직무역량 분석 반영, 프로젝트 기반 수업, 산업계 인사의 교원 채용, 현장실습이나 채용약정 등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유인 제공 등 기업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학생의 교육선택권 확충을 위해 학사운영의 유연화, 이수자 인증 및 학점인정 확대 등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참여 유인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 교육부는 동 사업을 신규 추진한 2023년 반도체 분야에서 총 10개 대학을 선정·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반도체 분야에 추가로 18개 대학을 선정하는 한편, 이차전지 분야 4개 대학, 디스플레이 분야 3개 대학, 바이오 분야 4개 대학, 항공·우주 분야 3개 대학 등 총 42개 대학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는 미래차 분야(2개 대학)에 더해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AI 분야까지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기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지원 분야 현황]

| 구분 | | 반도체 | 이차전지 | 디스플레이 | 바이오 | 항공·우주 | 미래차 | AI |
|---|---|---|---|---|---|---|---|---|
| 2025년 지원(예정) 분야 | 계속 | 28개교 (2개교*) | 4개교 | 3개교 | 4개교 | 3개교 | - | - |
| | 신규 (예정) | - | - | - | - | - | **2개교** | **3개교**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절차 및 절차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추경예산안을 통해 신규 지원하는 AI 분야의 실제 교육과정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동 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반도체 분야 신규 지원 대학 선정이 6월 28일 완료되어 하반기부터 집중교육과정이 운영되었고, 2024년에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규 분야에 대한 지원 대학 선정이 7월 8일에 완료되는 등 각 분야별 신규 선정 관련 사업계획 수립, 선정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선정평가,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실제 대학 단위의 사업 운영(단기 집중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연례적으로 하반기가 되어서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2025년의 경우, 2023년 선정 대학 중 2개교(한국공학대학교 및 가천대학교)의 사업 종료에 따른 추가 선정 및 미래차 분야의 2개교 신규 선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 중인 상황으로, 3월 14일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4월 예비신청 및 본신청 접수 후 5월 13일부터 서면 검토와 대면평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선정평가를 거쳐 6월 2일 선정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6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절차별 추진현황]

| 사업공고 | ⇒ | 가신청 접수 (예비신청) | ⇒ | 본신청 접수 | ⇒ | 선정평가 | ⇒ | 최종선정 | ⇒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집행 |
|---|---|---|---|---|---|---|---|---|---|---|
| '25.3.14~ 4.25 | | 3.31~4.4 | | 4.14.~4.25. | | 5.13.~5.30. | | 6.2. | | 6.26.(안)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신규 편성한 AI 분야의 지원 대학 선정에도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동안 각 절차

별로 소요된 기간을 고려할 경우 7월 중 추경예산안 확정 후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등을 거쳐 10월 이후가 되어서야 지원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경우, 하반기 내에 AI 분야의 단기 집중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추경예산안에서 목표로 제시한 AI 분야 인재 양성 목표(2025년 기준 1개교당 50명씩 총 150명)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추경예산안 확정 후 7월 중에 AI 부트 캠프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선정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8월초까지 신규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8월 중에 선정평가를 완료하여 8월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그러나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경우, 관련 사업단 구성, 학사 운영과정 마련, 학생 지원 및 교원제도 개선 등 대학 내 운영체제에 관한 준비에 더해, 집중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섭외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및 장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면밀한 사전 준비 및 사업계획서 마련이 필요하다.

○ 따라서 절차별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추진할 경우 참여 대학의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서가 충실히 작성·제출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선정평가 기간이 단축될 경우 지원 대학 선정의 공정성, 엄밀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교육부는 동 사업에서 선정된 대학별로 연간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신규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므로 6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7억 5,000만원씩 총 22억 5,000

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규 지원 대학 선정 절차에 평균적으로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어 빨라도 9월 이후에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분으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리하자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사업 추진절차 및 절차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추경예산안을 통해 신규 지원하는 AI 분야의 실제 집중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4.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 문제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 (2024년 결산 분석 / 2025.7.) –

## 가. 현 황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1)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예산으로, 교육부는 2024년도 예산현액 6,004억 2,600만원 중 5,675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28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4회계연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4 | | | | | | | 2025 |
|---|---|---|---|---|---|---|---|---|
|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현액 (A) | 집행액 (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예산액 |
| 특별교부금 | 2,534,740 | - | - | 2,534,740 | 2,395,842 | - | 138,898 | 2,619,866 |
| 지역현안 | 600,426 | - | - | 600,426 | 567,529 | - | 32,897 | 743,713 |

주: 동 사업의 2025년 본예산(당초 계획액)은 7,437억원이나 제2회 추경예산은 7,269억원으로 감액되었음

자료: 교육부

## 나. 분석의견

○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 더해,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지원 범위 및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법령 제정 추진경과 및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육발전특구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르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은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및 개선,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시·도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여 제안한 지역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이다.

-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시·도교육감은 지역현안 수요 발생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투자효과 등을 검토하여 교육부에 연중 수시로 신청하며, 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지역간 형평성, 재정여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이 확정·교부하는 구조이다.
- 다만, 교육부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관련 법적 근거 및 정책 추진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 대상 범위 및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교육부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시·도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대한민국 문화특구 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23.12.6.)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타 특구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교육 개혁과제(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전환 등)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별로 특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시하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개요]

| 구분 | 세부내용 |
|---|---|
| 목적 | - 지역공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소멸 및 저출산 완화 |
| 지정 현황 | - 56개 특구(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 |
| 주요 사업 | - (유아·돌봄)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br>- (초중등) 지역 특화 교육과정 개발<br>- (고등교육) 지역 대학-산업 연계 프로그램<br>-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고-기업 연계, 지역 산업 인재 양성<br>⇒ 사업의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육 全 분야에 걸쳐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

자료: 교육부

- 현재 교육부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및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3개 유형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1차로 31개 특구, 7월 2차로 25개 특구를 지정하여 총 56개 교육발전특구에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현황]

□ 추진 경과
-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교육자유특구 기본방향」 발표('23.9.14.)
- 교육부,「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발표('23.12.8.)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구성('24.2.6)
-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24.2.28)
-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24.7.30.)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24.12.24.),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24.11.26.) 발의

□ 지정 현황: 56개 특구(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

| 유형 | 신청단위 | 지정 | 선도지역(32개) | 관리지역(24개) |
|---|---|---|---|---|
| 1유형 | 기초지자체 | 41건<br>(42개 기초지자체) | -(강원) 춘천, 화천, 원주, 강릉<br>-(충북) 충주, 진천-음성<br>-(경북) 포항, 구미, 상주, 울진, 김천, 영주, 영천, 울릉<br>-(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br>-(충남) 공주, 금산<br>-(전남) 순천 | -(충북) 제천, 옥천, 괴산, 보은<br>-(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br>-(인천) 강화<br>-(경북) 칠곡, 봉화, 경산<br>-(충남) 서산<br>-(전남) 광양<br>-(강원)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br>-(경남) 남해 |
| 2유형 | 광역지자체 | 7건<br>(7개 광역지자체 전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 -세종 |
| 3유형 |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 8건<br>(5개 광역, 41개 기초지자체) | -경북(안동-예천)<br>-경남Ⅰ(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br>-전북Ⅰ(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br>-전남Ⅰ(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br>-경남Ⅱ(의령, 창녕, 거창, 함양) | -충남(아산)<br>-전북Ⅱ(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br>-전남Ⅱ(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

※ 예비지정: 1유형 8개 (경기) 가평, (강원) 홍천, (충북) 청주, 영동, 증평 (경북) 경주, 문경, (경남) 통영
3유형 1개 전남(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

자료: 교육부,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 2025.3.

- 그러나 교육발전특구는 각종 법적 규제의 완화, 세제 혜택 등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구체적으로,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교육발전특구(당초 명칭은 '교육자유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 중 교육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교육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에 관한 개별 법률이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삭제된 바 있다.
- 이후 2024년 7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2024년 12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각 법률안은 2025년 5월말 현재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 특히, 교육부는 아직까지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체적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부산 305억원, 경북 297억원, 대구 214억원 등 총 1,892억원을 교부하였고, 2025년의 경우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총 3,008억원을 교부하는 등 2년간 총 4,900억원의 교부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더해,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1차년도부터 총 56개 특구(7개 광역지자체, 83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큰 규모의 교부금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할 경우 시범사업 지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 시범사업이란 본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의 규모와 범위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시범사업 초기부터 56개 특구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 운용으로 판단된다.
-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저출산 및 지역소멸이라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사업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하므로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특화특구법, 혁신도시법, 도심융합특구법 등 기존의 특례 관련 법령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특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특례가 적용된 사례가 없는바, 지역의 규제완화 요구를 기반으로 지역별 적용이 가능한 특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법률에 반영된 교육 분야 특례 조항(예시)]

(지역특화특구법, 혁신도시법, 도심융합특구법 등)

① 학교설립 : 공립학교 설립주체의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허용,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자율화 등
② 교원 인사 : 지방공무원 신분의 교원, 외국인 교원 및 강사, 교장임기 등
③ 학교 시설 및 폐교 활용 :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사용, 대부 또는 매각 자율 등
④ 교육과정 운영 : 입학 편의제공 등
⑤ 교육재정 지원 : 기초지자체 단위 학교 지원 등

자료: 교육부

-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교육부는 향후 법률 제정과 관련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발전특구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회